



정책 23-10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및 재지정 심사기준 개선 연구

2023. 10.

본 보고서의 연구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연구진

연구책임 : 서원선(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연구개발팀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이해경(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부장)

이수용(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부연구위원)

이태현(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연구개발팀 연구원)

자문위원

김성진 (비전원격평생교육원 교수)

남용현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초빙교수)

박주영 (전주대학교 재활학과 교수)

정승원 (우석대학교 재활상담학과 교수)

발간사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는 경제적 자립을 통해 최종적으로 구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직업재활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국가가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생산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은 전체 근로자의 70% 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최소 10명 이상), 장애인 근로자 중 60% 이상이 중증장애인인 시설입니다.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 심사 및 매 3년마다 재지정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하는 동안 지정 및 재지정 심사기준에 대한 변화가 거의 없었고, 지정과 재지정 심사 기준이 분리되지 않아 많은 행정적 소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정 및 재지정 심사 목적의 차이점을 구분하고 각각의 심사 목적에 적합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행정적 소모를 최소화하는 한편, 생산시설 담당자의 업무 과중을 줄이고자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및 재지정 심사 기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및 재지정 심사 기준 개선에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생산시설 운영의 내실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과 연구가 진행되는 동안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자문위원, 생산시설 담당자, 학계 전문가, 기타 관계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10월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이 경 혜

▶ 목 차

연구요약	ix
I. 서론	1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1
2. 관련 선행연구	2
1) 생산시설 지정 기준	2
2) 생산시설 행정처분	9
3) 지도·감독	9
3. 연구범위	10
4. 연구방법	10
5. 연구수행체계	11
II.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및 재지정 심사기준 국내·외 사례	12
1. 우리나라	12
2. 미국	18
1) 어빌리티원 판매자(AbilityOne Distributors) 허가를 위한 주요 규정	19
2) 어빌리티원 판매자 허가와 관련된 세부 기준	20
3. 일본	24
1) 일본의 우선구매제도	24
2) 일본의 우선구매제도의 구성 및 범위	25
4. 시사점	28
III.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담당자 포커스그룹인터뷰	30
1. 연구 설계 및 질문의 개발	30
2. 자료수집 과정 및 절차	31
3. 자료 분석	33
4. 조사 결과	33



1) 주제1: 초기 지정 심사기준의 강화	34
2) 주제2: 재지정 행정절차 간소화 및 행정절차 개선	35
3) 주제3: 재지정 인센티브 도입	36
4) 주제4: 시설 운영 기준 개선 및 지도 개선	37
IV.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지정 및 재지정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델파이 조사	40
1. 델파이 조사	40
2. 델파이 조사참여자 선정기준	40
3. 델파이 조사 도구	41
1) 델파이 1라운드 설문지	42
2) 델파이 2라운드 설문지	43
3) 델파이 조사 절차	46
4) 델파이자료 분석방법	47
5) 연구결과	47
V. 결론 및 제언	53
1. 재지정 심사 관련 행정 간소화	53
1) 생산시설 관련 공공정보의 연계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	53
2) 재지정 신청 서류 축소	56
3) 직접생산 확인 서류 대체	57
4) 재지정 심사 시 현장심사 면제	58
2. 재지정 심사 인센티브	58
3. 행정처분	62
1) 지정취소	62
2) 과징금	63
3) 과태료	65
4. 기타 결론	66
1) 재지정 심사 기간 연장	66
2) 장기 재인증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66
참고문헌	67
부록	68

▶ 표목차

〈표 Ⅰ-1〉 각 심사대상 및 심사목적	1
〈표 Ⅰ-2〉 심사기준 흔재 예시	2
〈표 Ⅰ-3〉 지정 및 재지정 관련 항목별 심사기준	3
〈표 Ⅱ-1〉 우리나라 지정 및 재지정 항목별 심사기준	12
〈표 Ⅱ-2〉 일본 우선구매 대상 물품과 용역 범위	26
〈표 Ⅱ-3〉 일본 우선구매 대상 시설 및 기관 유형과 정의	27
〈표 Ⅲ-1〉 FGI 질문 내용	30
〈표 Ⅲ-2〉 FGI 참여자 일반 사항	32
〈표 Ⅲ-3〉 FGI 분석결과	33
〈표 Ⅳ-1〉 델파이 전문가 리스트	41
〈표 Ⅳ-2〉 델파이 설문지 문항 구성	42
〈표 Ⅳ-3〉 델파이 1라운드 설문지 주요 내용	43
〈표 Ⅳ-4〉 응답자 수에 따른 내용타당도 비율(CVR)의 최소값	44
〈표 Ⅳ-5〉 델파이 1라운드 결과에 따른 추가 요인	45
〈표 Ⅳ-6〉 델파이 1라운드 결과에 따른 삭제 요인	45
〈표 Ⅳ-7〉 델파이 1라운드 결과 수정 및 삭제 요인 설명	45
〈표 Ⅳ-8〉 델파이 1라운드 분석 결과(전체)	48
〈표 Ⅳ-9〉 델파이 1라운드 분석 결과 (현장 전문가)	49
〈표 Ⅳ-10〉 델파이 1라운드 분석 결과 (학계 전문가)	49
〈표 Ⅳ-11〉 재지정 심사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다중응답)	51
〈표 Ⅳ-12〉 델파이 2라운드 분석 결과(전체)	51
〈표 Ⅳ-13〉 델파이 2라운드 분석 결과 (현장 전문가)	52
〈표 Ⅳ-14〉 델파이 2라운드 분석 결과 (학계 전문가)	52
〈표 Ⅴ-1〉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재지정 심사 제출 서류 목록	53
〈표 Ⅴ-2〉 재지정 관련 서류 간소화(개정안)	57
〈표 Ⅴ-3〉 생산 공정별 직접생산 여부 확인(개정안)	57
〈표 Ⅴ-4〉 중증장애인근로자 증감을	59



〈표 V-5〉 장애인근로자 증감율	60
〈표 V-6〉 재지정 심사 면제 인센티브(개정안)	61
〈표 V-7〉 생산시설 지정취소 기준(개정안)	63
〈표 V-8〉 생산시설 과징금 기준(개정안)	64
〈표 V-9〉 생산시설 과태료 기준(개정안)	65

↘ 그림목차

[그림 I-1] 연구수행 체계	11
[그림 IV-1] 델파이조사 절차	46

연구요약

I. 서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란 전체 근로자의 70%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최소 10명이상), 장애인근로자 중 60%이상이 중증장애인인 생산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을 받은 시설임.
-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등이 신청 가능함(한국장애인개발원, 2023).
- 생산시설은 장애인근로자수 최소 10명이상, 장애인 고용비율 70% 이상, 중증장애인 고용비율 60%이상, 장애인 생산 참여시간 50% 이상, 직접생산 설비 가동 및 직접 생산 여부 확인 등을 심사하여 지정하고 있음(한국장애인개발원, 2023).
- 지정심사 절차는 크게 '신청접수 → 추가서류제출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 결과통보' 순으로 이루어짐.
- 매년 연간 생산시설 지정계획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신청 접수 기간에 꿈드래홈페이지(www.goods.go.kr)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함. 그러나 생산시설은 심사목적 및 성격이 다른 심사(지정심사, 재지정심사, 사후점검)를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심사에 적용하고있어 심사자 및 피심사자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음.
-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제정(2012.6.1.) 이후 약 10년동안 심사가 진행되었으나, 연구를 통한 심사기준 분석 및 개정은 없어 그간 심사사례를 반영한 심사기준 분석 및 개정이 필요함.
- 예를 들어, 기지정 생산시설 동기부여를 위해 장애인근로자 고용증가 및 급여향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심사기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



음.

- 이에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제정(2012.6.1.) 이후 약 10년동안 심사가 진행되었으나, 연구를 통한 심사기준 분석 및 개정은 없어 그간 심사사례를 반영한 심사기준 분석 및 개정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음.

2. 연구범위

-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현행 생산시설의 지정 및 재지정 심사기준을 조사하고 심사기준을 개선하는데 있음.
- 이를 위해 생산시설 지정 및 재지정 심사기준 관련 선행자료를 조사하고 생산시설 관련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심사기준 개선안을 도출하였음.
- 첫째, 제2장에서는 생산시설 지정 및 재지정 심사기준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제시하였음. 특히 미국,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둘째, 제3장에서는 현행 생산시설 지정 및 재지정 심사기준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음.
- 셋째, 제4장에서는 연구진이 제시한 심사기준의 내용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음. 델파이조사를 통해 신규 제안된 심사기준의 타당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였음.

3.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적용하였음.
-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생산시설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국내외 유사제도 및 심사기준, 심사절차 등을 분석하였음.
- 둘째,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현행 심사기준의 문제점을 파악하였음. 현장 전문가 18인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여 생산시설 지정 및 재지정 관련 심사기준을 항목별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였음(적격성,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비율, 장애인근로자 생산참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 직접생산 등).
- 셋째, 전문가 델파이패널 15인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 1차, 2차를 실시하여 제시된 개정 심사기준의 내용타당도를 조사하였음.
 - 넷째, 결론 및 제언을 통해 생산시설 지정 및 재지정 관련 심사기준(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하였음.

II.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및 재지정 심사기준 국내·외 사례

1. 시사점

- 생산시설 지정 및 재지정 심사기준과 관련해 해외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 심사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첫째, 지정 및 재지정 심사기준의 명확한 분리가 필요함.
- 우리나라의 경우 지정 심사기준과 재지정 심사기준의 구분이 모호해 재지정을 위해 초기에 제출했던 심사서류를 중복해 제출하고 있음.
- 이에 재지정 심사준비에 시설 담당자들은 많은 행정적 소모를 하고있어 재지정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의 경우 지정 이후 자격 유지를 위해 매 분기마다 어빌리티원 제품의 총 판매 상태나 비영리단체 상태를 보고함.
- 이처럼 시설 유지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만을 요구하여 초기 심사때 제출한 행정서류의 중복을 피하고있어 업무가 간소함.
- 이러한 점을 고려해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을 통해 생산시설로의 진입 및 유지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일본의 경우 여러 종류의 행정서류 제출을 통해 생산시설 지정을 승인하기보다는 장애인근로자 수를 충족하는 경우 생산시설로 신고하고 있음.



- 특히 장애인근로자 수를 충족하여 유지하는 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간주하고 있어 생산시설 유지를 위한 타 행정노력보다는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고려해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시설 지정 및 재지정에 있어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유지나 개선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 셋째, 재지정의 경우 매출액이나 시설 발전과 관련된 사항만 중점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재지정을 위해 시설 적격성, 장애인근로자 현황, 시설 및 장비 현황 등 다양한 항목을 심사하고 있으나 재지정의 주요한 목적이 시설 지정 이후 장애인 직업재활 달성 및 생산성 발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설 발전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판매액을 중점적으로 재심사 과정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미국의 경우 시설은 매 분기 말일까지 제품의 총판매 상태를 보고하며 매년 최소 \$5,000의 판매를 반드시 유지하도록하며 시설의 매출과 관련된 상황을 중점적·주기적으로 어빌리티원 위원회에 공개하고 있음.
- 이처럼 여러 항목 중 재지정의 경우에는 시설의 매출이나 생산력 발전 정도를 검증에 초점을 두어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임.

III.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담당자 포커스그룹인터뷰

1. 연구 설계 및 질문의 개발

- 본 연구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지정 및 재지정 심사기준 개선 사항을 질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 방법을 활용하였음.
- 질문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FGI 연구방법 절차에 따라 질문의 원칙을 숙지하고 연구 목적을 명확히 한 후 그러한 목적에서 질문이 벗어나지 않도록 하였음.
- 책임연구자는 질문의 초안을 작성하고 상호검증을 하였으며 연구의 자문위원들에게 질문에 대한 자문을 추가적으로 요청하였음.

〈표 Ⅲ-1〉 FGI 질문 내용

영역	주요질문
신청자의 적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 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정신보건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에 한하고 있는데 신청자격 기관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근로자" 기준에 시각장애인(1~2급), 지체장애인(1~2급), 청각장애인(2급), 신장장애인(2급), 뇌전증장애인(2급), 간장애인(1~2급), 안면장애인(2급), 장루·요루장애인(2급)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3급 장애인을 포함해야 합니까? - 해당 품목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근로를 제공하는 장애인이 최소 1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까? - 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70% 이상) 및 중증장애인 고용비율(장애인 근로자 중 60% 이상, 제5조 각 호의 품목은 장애인근로자 중 30% 이상)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까?
장애인근로자 생산 공정 참여율 (총 근로시간 5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근로자 생산 공정 참여율 (총 근로시간 50% 이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까?
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생산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생산"이란 신청일 기준 생산 공장에서 해당품목의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필요한 시설, 설비, 생산 인력 및 전문기술인력, 제품 생산 및 판매에 필요한 자격 등을 갖추고 해당 품목을 직접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 생산공장 인정 범위와 관련해 수정할 내용이 있습니까? - 생산·검사설비의 구매 또는 설치 증빙서류(계약서, 지급내역, 생산시설 재무제표 상 자산등재 등)를 기초로 현장의 설치 설비와 대조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 일용직을 전문기술 인력의 보유로 간주할 필요가 있습니까? - 제조물품 등의 완제 여부 및 기타사항과 관련해 수정할 내용이 있습니까?
재지정 관련 추가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지정 심사 간소화를 위한 인센티브나 추가 문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장기간 중증장애인근로자 고용 유지, 우수 기관 선정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합니까?



2. 자료수집 과정 및 절차

- 본 연구에서는 생산시설 지정·재지정 심사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생산시설 담당자를 모집하였음.
- 생산시설 담당자는 최소 5년 이상 경력이 있고 현재 지정받은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선정하였음.
- FGI는 2023년 5월에 진행하였으며, 참여자는 공동연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심사팀의 협조로 모집하였음.
- 참여자들은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생산시설 담당자 18인으로 구성하였음.
- FGI에 참석한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III-2>과 같음.
- FGI는 총 5회 실시하였으며 1회에 3인-4인이 참석하였음.
-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방법,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각 인터뷰에 소요된 시간은 2시간 정도였음.

<표 III-2> FGI 참여자 일반 사항

순번	성별	나이	시설특성
참여자1	남성	40대	장애인보호작업장(주요제품: 가스차단기, 방향제, 소독방역)
참여자2	여성	40대	장애인보호작업장(주요제품: CCTV, 조명기구)
참여자3	남성	40대	장애인복지단체(주요제품: 배전반·제어장치)
참여자4	남성	50대	장애인근로사업장(주요제품: DM발송, 마스크, 사무용지류, 인쇄물)
참여자5	남성	40대	장애인근로사업장(주요제품: PE봉투, 비닐봉투류)
참여자6	남성	40대	장애인보호작업장(주요제품: 사무용지류, 화장지류)
참여자7	여성	50대	장애인보호작업장(주요제품: 문서파일류, 살균소독수, 세차, 소독방역, 청소)
참여자8	여성	40대	장애인복지단체(주요제품: 피복류)
참여자9	남성	40대	장애인복지단체(주요제품: CCTV, 인쇄물, 조명기구)
참여자10	남성	50대	장애인근로사업장(주요제품: 공연서비스)
참여자11	남성	40대	장애인보호작업장(주요제품: 제과, 제빵)
참여자12	여성	40대	장애인보호작업장(주요제품: 물비누, 비누, 화장품)

순번	성별	나이	시설특성
참여자13	여성	40대	장애인복지단체(주요제품: 인쇄물)
참여자14	남성	50대	장애인보호작업장(주요제품: 제과, 제빵)
참여자15	남성	50대	장애인복지단체(주요제품: 인쇄물, 재생토너카트리지, 판촉물인쇄, 현수막)
참여자16	남성	40대	장애인근로사업장(주요제품: 공기청정기, 보일러, 운수매트, 선풍기)
참여자17	여성	40대	장애인보호작업장(주요제품: 배전반·제어장치, 약품투입기, 전화장비네트워킹연결장치, 하수처리장치및구성품)
참여자18	여성	40대	장애인근로사업장(주요제품: CCTV, 가구류, 배전반·제어장치)

4. 조사결과

- 자료 분석결과 생산시설 지정·재지정 심사기준의 문제점과 관련해 4개의 주제와 12개의 세부주제가 도출되었음.
-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표 III-3>과 같음.

<표 III-3> FGI 분석결과

주제	세부주제
주제1: 초기 지정 심사기준의 강화	(1) 비장애 사회적협동조합의 신규지정 제한 (2) 영리법인의 생산시설 지정 제한 (3) 다수 시설 신규 지정에 의한 과도한 경쟁 완화
주제2: 재지정 행정절차 간소화 및 행정절차 개선	(1) 재지정 중복 서류 간소화 (2) 3년인 재지정 기간 확대
주제3: 재지정 인센티브 도입	(1) 장애인 고용율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 (2) 매출액 및 장애인근로자 임금 비율에 의한 인센티브 (3) 장기 재인증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주제4: 시설 운영 기준 개선 및 지도 개선	(1) 사후점검 강화 (2) 설비 기준 완화 (3) 불법행위에 대한 패널티 적용 (4) 3개월인 장애인 채용 기간 확대



IV.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지정 및 재지정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델파이조사

1. 델파이 조사참여자 선정기준

- 델파이기법은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분산된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하나의 의견으로 수렴해가는 방법으로 다른 집단 의사결정 방법에 비해 장점이 많아 활용이 높음.
- 참여자의 선정기준은 학계 전문가(대학 및 연구기관)는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제도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교수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 하였으며, 현장전문가(사업수행기관)는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제도 운영 경력이 최소 (3)년 이상인 자로 의도적 표집을 통해 델파이 조사 대상을 선정하였음.
- 응답 회수율, 패널 크기와 관련한 선행연구 결과를 감안하여 전문가 15인을 선정하였고, 전화 혹은 이메일을 통해 패널 의뢰와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하였음.
- 그 결과 학계 6명, 현장전문가 9명 총 15인의 전문가가 패널로 선정되었음.

〈표 IV-1〉 델파이 전문가 리스트

연번	번호	직위/직급	성별	연령	경력기간
1	학계1	교수	남	60대	20년 6개월
2	학계2	교수	여	50대	23년
3	학계3	교수	남	60대	33년
4	학계4	미기입	남	50대	-
5	학계5	교수	남	50대	10년
6	학계6	교수	남	50대	18년9개월
7	현장1	현장전문가	남	40대	16년
8	현장2	현장전문가	남	50대	27년4월
9	현장3	현장전문가	여	40대	23년
10	현장4	현장전문가	남	50대	3년 1개월

연번	번호	직위/직급	성별	연령	경력기간
11	현장5	현장전문가	남	50대	20년
12	현장6	현장전문가	남	60대	7년
13	현장7	현장전문가	남	40대	12년 7개월
14	현장8	현장전문가	여	40대	8년 7개월
15	현장9	현장전문가	여	50대	20년 3개월

2. 연구결과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및 재지정 구성요인은 델파이 2라운드 조사 결과로 도출되었음.
- 따라서 델파이 각 라운드 결과와 조사결과의 추정이 타당한가를 보기 위한 의견수렴 및 내용타당도 측정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도출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및 재지정 심사기준을 제시하였음.

〈표 IV-2〉 델파이 1라운드 분석 결과(전체)

문항구성	평균	표준 편차	CVR .49 이상
재심사 서류 간소화	3.56	0.56	0.47
직접생산 확인_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증 같음	4.06	0.62	0.87
재지정 심사 인센티브_추가고용	3.13	1.05	0.07
재지정 심사 인센티브_편의시설 설치	2.56	1.03	-0.33
재지정 심사 인센티브_ 인권교육	2.50	1.40	-0.20
재지정 심사 인센티브_우선구매 교육이수	3.06	1.28	-0.07
기타 기준 재정_장애인 채용증빙 유예	3.81	0.80	0.73
기타 기준 재정_재지정5년연장	3.25	1.36	0.07
기타 기준 재정_행정처분규정추가	3.75	1.31	0.73
기타 기준 재정_체크리스트	3.63	0.99	0.47



〈표 IV-3〉 델파이 1라운드 분석 결과 (현장 전문가)

문항구성	평균	표준 편차	CVR
			.78 이상
재심사 서류 간소화	3.78	0.67	0.33
직접생산 확인_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증 같음	4.44	0.73	0.78
재지정 심사 인센티브_추가고용	2.78	0.97	-0.56
재지정 심사 인센티브_편의시설 설치	2.44	1.01	-0.56
재지정 심사 인센티브_ 인권교육	2.89	1.45	-0.11
재지정 심사 인센티브_우선구매 교육이수	3.11	1.36	-0.33
기타 기준 재정_장애인 채용증빙 유예	4.22	0.97	0.78
기타 기준 재정_재지정5년연장	3.44	1.74	0.11
기타 기준 재정_행정처분규정추가	3.44	1.42	0.56
기타 기준 재정_체크리스트	3.44	1.01	0.11

〈표 IV-4〉 델파이 1라운드 분석 결과 (학계 전문가)

문항구성	평균	표준 편차	CVR
			.99 이상
재심사 서류 간소화	3.83	0.41	0.67
직접생산 확인_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증 같음	4.17	0.41	1.00
재지정 심사 인센티브_추가고용	4.17	0.41	1.00
재지정 심사 인센티브_편의시설 설치	3.17	0.98	0.00
재지정 심사 인센티브_ 인권교육	2.33	1.37	-0.33
재지정 심사 인센티브_우선구매 교육이수	3.50	1.22	0.33
기타 기준 재정_장애인 채용증빙 유예	3.83	0.41	0.67
기타 기준 재정_재지정5년연장	3.50	0.55	0.00
기타 기준 재정_행정처분규정추가	4.83	0.41	1.00
기타 기준 재정_체크리스트	4.50	0.55	1.00

<표 IV-5> 델파이 2라운드 분석 결과(전체)

문항구성	평균	표준 편차	CVR
			.49 이상
서류간소화	3.38	0.82	0.07
추가서류추가재심사	3.94	0.41	1.00
중소기업직접생산확인	4.00	0.59	0.87
수정문항_추가고용	3.63	0.74	0.60
채용유예	3.81	0.79	0.73
행정처분규정추가	3.88	0.99	0.87
체크리스트	3.63	1.06	0.47
행정처분강화	3.25	0.99	0.07
과징금강화	3.31	0.83	0.20
지정취소업무기준강화	3.44	0.89	0.33
과태료부과기준강화	3.31	0.91	0.07

<표 IV-6> 델파이 2라운드 분석 결과 (현장 전문가)

문항구성	평균	표준 편차	CVR
			.78 이상
서류간소화	3.56	1.0138	-0.11
추가서류추가재심사	4.33	0.5000	1.00
중소기업직접생산확인	4.33	0.7071	0.78
수정문항_추가고용	3.67	0.8660	0.33
채용유예	4.22	0.9718	0.78
행정처분규정추가	3.89	1.1667	0.78
체크리스트	3.56	1.2360	0.11
행정처분강화	3.44	1.1304	-0.11
과징금강화	3.33	0.7071	-0.11
지정취소업무기준강화	3.56	0.8819	0.11
과태료부과기준강화	3.22	0.6667	-0.33



〈표 IV-14〉 델파이 2라운드 분석 결과 (학계 전문가)

문항구성	평균	표준편차	CVR
			.99 이상
서류간소화	3.67	0.52	0.33
추가서류추가재심사	4.00	0.00	1.00
중소기업직업생산확인	4.17	0.41	1.00
수정문항_추가고용	4.17	0.41	1.00
채용유예	3.83	0.41	0.67
행정처분규정추가	4.50	0.54	1.00
체크리스트	4.33	0.51	1.00
행정처분강화	3.50	0.83	0.33
과징금강화	3.83	0.98	0.67
지정취소업무기준강화	3.83	0.98	0.67
과태료부과기준강화	4.00	1.10	0.67

V. 결론 및 제언

1. 재지정 심사 관련 행정 간소화

〈표 V-1〉 재지정 관련 서류 간소화(개정안)

<p>1. 재지정 신청자의 신청서류</p> <p>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시설이 재지정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아래 서류를 제출한다.</p> <p>① 재지정심사 신청양식</p> <p>② 근로자 임금대장 및 산정방식</p> <p>③ 재무제표 5종(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p> <p>나. 재지정 심사를 위해 아래 서류 제출을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p> <p>① 중증장애인생산품사업계획서</p> <p>② 근로계약서</p> <p>③ 세부품목신청서</p> <p>④ 4대보험가입자명부</p> <p>⑤ 장애인증명서</p>
--

2. 재지정 심사 인센티브

〈표 V-2〉 재지정 심사 면제 인센티브(개정안)

<p>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지정 후 재지정 심사 면제를 위한 인센티브 방법으로 아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p> <p>① 장애인근로자를 추가 고용한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혹은 재지정) 이후 36개월간 추가 고용한 장애인근로자가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10/100인 경우(소수점은 버림) - 지정(혹은 재지정) 이후 36개월간 추가 고용한 장애인근로자가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20/100인 경우(소수점은 버림) - 지정(혹은 재지정) 이후 36개월간 추가 고용한 장애인근로자가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30/100인 경우(소수점은 버림) - 추가 고용한 장애인근로자는 36개월간 평균하여 적용한다. 추가 고용한 장애인근로자의 최소 고용 기간은 18개월로 한다. - 추가 고용한 장애인근로자의 고용비율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 고용한 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 : 추가 고용한 장애인근로자 수/전체 장애인근로자 수 × 100 <p>②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에 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p> <p>③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유공 포상을 받은 경우</p> <p>④ 3년 동안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p> <p>나. 재심사 인센티브는 자발적이며 인센티브를 준수하지 않음에 어떠한 불이익은 없다.</p>
--

3. 행정처분

〈표 V-3〉 생산시설 지정취소 기준(개정안)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개선명령	영업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나.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조제1항제2호	개선명령	영업정지 3개월	지정 취소
1)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지정 취소
2)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법	지정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때 또는 지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제10조제1항제3호	취소		
라.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법 제10조제1항제5호	지정 취소		
마. 법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0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지정 취소

〈표 V-4〉 생산시설 과징금 기준(개정안)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 1개월당 과징금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	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
2)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	제2호나목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
3) 법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	제2호다목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

〈표 V-7〉 생산시설 과태료 기준(개정안)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18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조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	100	200	300
법 제18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00		

I 서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란 전체 근로자의 70%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되어 있고(최소 10명이상), 장애인근로자 중 60%이상이 중증장애인인 생산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을 받은 시설이다.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장애인근로사업장,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등이 신청 가능하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23). 생산시설은 장애인근로자수 최소 10명이상, 장애인 고용비율 70% 이상, 중증장애인 고용비율 60%이상, 장애인 생산 참여시간 50% 이상, 직접생산 설비 가동 및 직접 생산 여부 확인 등을 심사하여 지정하고 있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23). 지정심사 절차는 크게 '신청접수 → 추가서류제출 →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 결과통보' 순으로 이루어진다.

매년 연간 생산시설 지정계획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신청 접수기간에 굚드래홈페이지(www.goods.go.kr) 통해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생산시설은 심사목적 및 성격이 다른 심사(지정심사, 재지정심사, 사후점검)를 하나의 기준으로 모든 심사에 적용하고있어 심사자 및 피심사자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표 1-1〉 각 심사대상 및 심사목적

항목	지정심사	재지정심사	사후점검
심사대상	신규진입시설	기지정 생산시설 (유효기간 만료대상 시설)	기지정 생산시설
심사목적	지정기준을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 실시	유효기간 연장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사기준 준수에 대한 심사 실시	심사기준에 대한 상시 준수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 실시



〈표 1-2〉 심사기준 혼재 예시

<p>2. 장애인근로자 고용</p> <p>마. 장애인근로자 처우 및 안전 등</p> <p>2) 장애인근로자의 안전 등</p> <p>가) 생산시설은 장애인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하며, 명백히 위험하거나 유해(有害)한 직무에 장애인근로자를 배치하여서는 안 된다. ⇨ <u>전체 심사 적용</u></p> <p>- 인체에 유해한 원부자재를 주로 사용하거나 작업공정 및 설비의 위험도가 높은 품목은 중증장애 인생산품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p> <p>나) 생산시설은 장애인근로자의 이동 및 작업 등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수준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u>전체 심사 적용</u></p> <p><u>다) 생산시설의 임직원은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해 착취·학대 또는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개별 법령 등에서 정한 예방조치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u></p> <p>⇨ <u>재지정심사 및 사후점검 시 적용</u></p> <p><u>라) 생산시설의 장과 직업재활 지원 인력은 지정 이후 연 1회 이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방법으로 중증 장애인생산품 우수구매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u></p> <p>⇨ <u>재지정심사 및 사후점검 시 적용</u></p>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제정(2012.6.1.) 이후 약 10년동안 심사가 진행되었으나, 연구를 통한 심사기준 분석 및 개정은 없어 그간 심사사례를 반영한 심사기준 분석 및 개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기지정 생산시설 동기부여를 위해 장애인근로자 고용증가 및 급여 향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심사기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에 생산시설 지정 관련 심사기준 제정(2012.6.1.) 이후 약 10년동안 심사가 진행되었으나, 연구를 통한 심사기준 분석 및 개정은 없어 그간 심사사례를 반영한 심사기준 분석 및 개정을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2. 관련 선행연구

1) 생산시설 지정 기준

생산시설로 지정 받고자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용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후 유효기간(지정일

로부터 3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다시 지정받는다.

〈표 1-3〉 지정 및 재지정 관련 항목별 심사기준

항목	세부내용
신청자의 적격성	<p>가.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정신보건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에 한한다.</p> <p>나.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 장애인직업재활 등 장애인복지를 주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해당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익사업 승인을 득하였거나, 법인 정관에 수익사업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단, 수익사업은 장애인복지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어야 한다.</p>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비율	<p>가. 장애인근로자 등의 정의</p> <p>1) “장애인근로자”란 신청일 기준 해당 품목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근로를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단, 해당 품목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영업직 등의 직원은 제외한다.</p> <p>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p> <p>② 생산시설의 대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p> <p>2) “전체 근로자”란 생산시설의 대표자를 제외한 전체 근로자로서 생산시설의 대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단, 정부 정책에 따라 임금의 전부가 지원되는 근로자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기준’ 4. 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된 직원 및 일용근로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p> <p>3) “중증장애인근로자”란 장애인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p>①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호흡기장애인, 언어장애인</p> <p>② 뇌병변장애인(1~3급), 심장장애인(1~3급)</p> <p>③ 시각장애인(1~2급), 지체장애인(1~2급), 청각장애인(2급), 신장장애인(2급), 뇌전증장애인(2급), 간장애인(1~2급), 안면장애인(2급), 장루·요루장애인(2급)</p> <p>④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3급)</p> <p>⑤ ③에 해당하는 장애를 2가지 이상 가진 장애인(3급)</p>



항목	세부내용
	<p>4) 2)의 “일용근로자”란 생산시설의 전체 근로자만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납기일 준수 등)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고용된 자로 해당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업무내용, 근로시간, 임금지급 내용 등 증빙서류가 확인되어야 한다. 단,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형태가 상시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p> <p>5) 생산시설의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대장(고용연월일, 종사업무,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등 포함), 출·퇴근기록부, 기타 관련 결재서류(임금지급 기안문서, 채용 기안문서 등)로 확인되어야 한다.</p> <p>6) 대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가 생산시설 외의 타 업체 등에 근로 또는 겸직하는 경우이거나, 타 업체 소속 임직원이 동 생산시설의 생산·영업 등 운영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단, 비영리법인 대표 등 보수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겸직 등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p> <p>7) 생산시설에서 제시된 근로자 외의 자가 현장에서 확인된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 증명원 등)로 확인되어야 한다.</p> <p>나. 장애인근로자 최소 고용인원 수</p> <p>1) 해당 품목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근로를 제공하는 장애인이 최소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각 품목 별로 근로를 제공하는 장애인이 최소 5명 이상이어야 한다.</p> <p>2) 단,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생산시설에서 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장애인근로자 최소 고용인원 수가 미달되었으나, 퇴사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총원되어 충족된 경우에는 장애인근로자 최소 고용인원 수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p> <p>다. 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70% 이상) 및 중증장애인 고용비율(장애인근로자 중 60% 이상, 제5조 각 호의 품목은 장애인근로자 중 30% 이상)</p> <p>1) 장애인근로자 및 중증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을 확인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다.</p> <p>① 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 산정방법 : (장애인근로자/전체근로자) × 100%</p> <p>② 중증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 산정방법 : (중증장애인근로자/장애인근로자) × 100%</p>

항목	세부내용
	<p>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생산시설이 공공기관과 계약 시 생산 시설 소속 근로자 외의 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 후 6개월 이내에 장애인근로자 및 중증장애인근로자 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p> <p>라.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가입 등</p> <p>1) 사업장의 대표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p> <p>2) 사업장의 대표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으로 지정받아야 한다.</p>
<p>장애인근로자 생산 공정 참여율 (총 근로시간 50% 이상)</p>	<p>가. 장애인근로자 생산 공정 참여율을 확인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다. 생산 공정 참여율 : (장애인근로자 근로시간/전체근로자 근로시간) × 100%</p> <p>나. '가'의 근로시간은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p>
<p>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생산 여부</p>	<p>가. 직접생산의 정의</p> <p>1) “직접생산”이란 신청일 기준 생산 공장에서 해당품목의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필요한 시설, 설비, 생산 인력 및 전문기술인력, 제품 생산 및 판매에 필요한 자격 등을 갖추고 해당 품목을 직접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p> <p>2) 특정업체로부터 원부자재를 구입하여 완제품의 형태로 동 업체에 납품하는 경우 직접생산을 인정하지 아니한다.</p> <p>나. 생산 공장</p> <p>1) 해당품목 관련 업종에 대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공장등록증명으로 확인한다. 다만, 건축법 등의 이유로 공장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같음한다.</p> <p>2) 생산 공장의 협소로 인해 설립승인 지역 내 생산 공장을 추가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차계약서, 임차료 지급 여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 여부 등 관련 서류가 확인되어야 한다.</p> <p>3) 생산 공장의 실 소재지, 사업장명, 대표자 등이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 ‘영업신고증’ 등 관련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단, 명칭이 불일치할 경우 해당 명칭이 생산시설 명의임이 관련 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p>



항목	세부내용
	<p>4) 임차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생산을 인정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산시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부내역, 생산시설 재무제표 상 보증금 등재여부, 소유자의 등기부등본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임차료 지원을 통해 생산시설의 운영법인 명의로 임차한 경우로서 운영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부내역, 운영법인 재무제표 상 보증금 등재여부, 소유자의 등기부등본 등이 확인되거나, 운영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생산시설에서 임차료를 납부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임대인이 생산시설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지 아니하더라도 임대공장에서 생산하는 품목과 동일 업종 또는 유사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③ 해당 생산시설이 운영하는 생산공장에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장이 중복 등록되어 있거나, 생산공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④ 생산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인 등 생산시설과 무관한 제3자가 부담하는 경우 ⑤ 타 업체의 사무실 또는 공장과 명확히 분리되어 있지 않거나, 생산시설이 타 동종 업체의 공장 또는 사업장 내부에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경우 ⑥ 생산공장을 무상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만, 생산공장의 소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시설의 운영법인 등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⑦ 타 업체의 제2공장 또는 지점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p>5) 기증의 경우, 기증 관련 서류로 이를 확인하고 공증인의 공증이 있어야 하며 건물등기부에 생산시설의 소유로 등재되어야 한다. 단, 조건부 기증 등 형식적인 기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p> <p>6)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자가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생산공장이 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각각의 출입구가 있어야 한다.</p> <p>7) 사업자등록증명상 '업태' 및 '업종'란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해당 품목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p> <p>다. 생산 설비의 구비 및 운영</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산·검사설비의 구매 또는 설치 증빙서류(계약서, 지급내역, 생산시설 재무제표 상 자산등재 등)를 기초로 현장의 설치 설비와 대조 확인하여 일치하여야 한다. 2) 해당 품목의 직접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며, 생산시설 소재지에 동 설비가 설치 및 가동이 되어야 하고, 생산시설 명

항목	세부내용
	<p>의의 구입에 따른 증빙서류, 생산시설 재무제표상 자산등재 등을 통해 해당 시설의 설비임이 증빙되어야 한다.</p> <p>3) 임차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하지 아니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산시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부내역, 생산시설 재무제표상 보증금 등재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② 임대인이 생산시설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③ 생산설비를 타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④ 생산설비 임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인 등 생산시설과 무관한 제3자가 부담하는 경우 ⑤ 생산설비를 무상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단, 생산설비의 소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있는 경우는 제외 <p>4) 기증의 경우, 기증 관련 서류로 이를 확인하고 공증인의 공증 및 생산시설 재무제표 등에 등재되어야 한다. 단, 조건부 기증 등 형식적인 기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p> <p>5) 생산설비 가동 여부는 전기요금 납부내역, 유류사용내역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단, 수주물량 미비 등으로 인해 전기요금 납부내역, 유류사용내역 등이 없는 경우 현장 확인시 생산설비의 가동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p> <p>라. 전문기술인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품목의 특성과 관련한 전문기술인력이 있어야 한다. 단, 해당 품목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일 경우, 동 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정한 생산인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전문기술 인력의 보유 여부는 생산시설의 대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 정상적인 임금지급내역, 생산 과정에의 참여여부,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 여부 및 경력 보유 여부, 생산설비의 취급기능 여부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단, 전문기술인력을 일용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p>마. 생산 공정별 직접생산 여부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산시설의 생산인력, 생산설비, 원부자재 등을 활용하여 해당 품목을 직접생산하고 있는지 여부가 생산 공정별로 현장 확인되어야 한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의 생산품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수급과 관련하여 원·부자재 수불관리대장, 매입장, 지출기



항목	세부내용
	<p>안, 대금지급 통장 내역, 외주가공서류 등 일체의 관련 서류 및 업무 처리 명의를 생산시설 명의로 일치하여야 하며, 해당 품목별로 원부자재 구매실적이 확인되어야 한다.</p> <p>3)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의 생산품 생산·판매와 관련하여 생산품 재고관리, 판매관리, 매출장, 생산일지, 수입기간, 수입대금 통장내역 등 일체의 관련 서류 및 업무처리 명의를 생산시설의 명의로 일치하여야 하며, 해당 품목별로 생산·판매실적이 확인되어야 한다.</p> <p>4) 직접 생산 관련 서류의 비치 여부 및 일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생산시설의 명의로 처리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 경우 운영법인 등과 생산시설의 회계가 명확히 분리되어야 한다.</p> <p>바. 제조물품 등의 완제 여부 및 기타사항</p> <p>1) 타 업체 등에서 제조된 반제품 또는 완제품 등을 시설·설비 구축 및 가동 없이 단순히 조립 공정 등 노동력에 의존하여 완성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p> <p>2) 해당품목의 제조·판매 등을 위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표시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표시 등이 생산시설 명의로 되어있어야 하고,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표시 등의 대상을 법인으로 한정하는 경우 동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표시 등이 생산시설의 운영법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한다.</p> <p>3) 타 업체 등과 형식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생산시설의 생산설비·작업장 등이 타 업체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적합으로 처리할 수 있다.</p> <p>4) 생산시설 운영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동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인건비, 원부자재구입비 등)를 제3자로부터 지급받을 경우 이사회 의결, 정상적인 대출 등을 통해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무상·임의지급 등은 부적합으로 처리한다.</p> <p>5) 생산품목별 납품실적 등이 확인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생산·납품한 경우 부적합으로 간주 처리할 수 있다.</p> <p>6) 물품의 경우 해당물품 또는 포장지에 생산시설 명의로 제조·판매원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해당품목의 특성상 생산시설 명의로 표시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p>

2) 생산시설 행정처분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산시설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단, 다목 또는 마목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가. 「특별법」 제9조제 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
- 나.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때 또는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
- 라.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생산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때
- 마. 「특별법」 제9조제 3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때
- 바.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3) 지도·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생산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기관에 출입하여 조사·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생산시설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조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연구범위

본 연구의 주요한 목적은 현행 생산시설의 지정 및 재지정 심사기준을 조사하고 심사기준을 개선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생산시설 지정 및 재지정 심사기준 관련 선행자료를 조사하고 생산시설 관련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심사기준 개선안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연구범위를 정하였다.

첫째, 제2장에서는 생산시설 지정 및 재지정 심사기준과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제시하였다. 특히 미국,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둘째, 제3장에서는 현행 생산시설 지정 및 재지정 심사기준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셋째, 제4장에서는 연구진이 제시한 심사기준의 내용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델파이조사를 통해 신규 제안된 심사기준의 타당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하였다.

4.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적용하였다.

첫째, 문헌조사를 통해 생산시설 우선구매제도에 대한 국내외 유사제도 및 심사기준, 심사절차 등을 분석하였다.

둘째, 전문가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현행 심사기준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현장 전문가 18인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를 실시하여 생산시설 지정 및 재지정 관련 심사기준을 항목별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하였다(적격성,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비율, 장애인근로자 생산참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생산 등).

셋째, 전문가 델파이패널 15인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 1차, 2차를 실시하여 제시된 개정 심사기준의 내용타당도를 조사하였다.

넷째, 결론 및 제언을 통해 생산시설 지정 및 재지정 관련 심사기준(안)을 최종적으로 마련하였다.

5. 연구수행체계

본 연구에서는 현행 생산시설 지정 및 재지정 심사기준을 분석하여 미시적으로는 심사기준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조사함과 동시에 거시적으로는 심사기준 개선안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의 실행과정을 도식화한 연구수행체계는 [그림 I-1]과 같다.



[그림 I-1] 연구수행 체계



II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및 재지정 심사기준 국내·외 사례

1. 우리나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용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정받은 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생산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심사항목별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23).

1. 신청자의 적격성
2.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비율
3. 장애인근로자 생산 참여
4.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직접생산

심사기준은 지정 및 재지정 심사에 적용하며, 지정(이하, 재지정을 포함한다.)받은 생산시설은 지정 이후에도 이 기준을 항상 충족해야 한다. 심사기준의 충족 여부는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생산시설을 지정 또는 재지정할 경우 서류 및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재지정을 할 경우에는 서류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표 II-1〉 우리나라 지정 및 재지정 항목별 심사기준

항목	세부내용
신청자의 적격성	<p>가.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정신보건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에 한한다.</p> <p>나.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 장애인직업재활 등 장애인복지를 주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및 해당부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으로서 주무관청으로부터 수익사업 승인을 득하였거나, 법인 정관에 수익사업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단, 수익</p>

항목	세부내용
<p>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비율</p>	<p>사업은 장애인복지단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이어야 한다.</p> <p>가. 장애인근로자 등의 정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근로자”란 신청일 기준 해당 품목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근로를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단, 해당 품목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영업직 등의 직원은 제외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② 생산시설의 대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 “전체 근로자”란 생산시설의 대표자를 제외한 전체 근로자로서 생산시설의 대표자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단, 정부 정책에 따라 임금의 전부가 지원되는 근로자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5의 ‘V.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설치·운영기준’ 4. 직원 배치기준에 따라 배치된 직원 및 일용근로자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한다. 3) “중증장애인근로자”란 장애인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아인, 정신장애인, 호흡기장애인, 언어장애인 ② 뇌병변장애인(1~3급), 심장장애인(1~3급) ③ 시각장애인(1~2급), 지체장애인(1~2급), 청각장애인(2급), 신장장애인(2급), 뇌전증장애인(2급), 간장애인(1~2급), 안면장애인(2급), 장루·요루장애인(2급) ④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3급) ⑤ ③에 해당하는 장애를 2가지 이상 가진 장애인(3급) 4) 2)의 “일용근로자”란 생산시설의 전체 근로자만으로 생산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유(납기일 준수 등)가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고용된 자로 해당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업무내용, 근로시간, 임금지급 내용 등 증빙서류가 확인되어야 한다. 단,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형태가 상시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5) 생산시설의 대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대장(고용연월일, 종사업무,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등 포함), 출·퇴근기록부, 기타 관련 결재서류(임금지급 기안문서, 채용 기안문서 등)로 확인되어야 한다. 6) 대표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가 생산시설 외의 타 업체 등에 근로 또는 겸직하는 경우이거나, 타 업체 소속 임직원이 동 생산시설의 생



항목	세부내용
	<p>산·영업 등 운영과정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단, 비영리법인 대표 등 보수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겸직 등의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다.</p> <p>7) 생산시설에서 제시된 근로자 외의 자가 현장에서 확인된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 증명원 등)로 확인되어야 한다.</p> <p>나. 장애인근로자 최소 고용인원 수</p> <p>1) 해당 품목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근로를 제공하는 장애인이 최소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각 품목 별로 근로를 제공하는 장애인이 최소 5명 이상이어야 한다.</p> <p>2) 단,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생산시설에서 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장애인근로자 최소 고용인원 수가 미달되었으나, 퇴사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총원되어 충족된 경우에는 장애인근로자 최소 고용인원 수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p> <p>다. 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70% 이상) 및 중증장애인 고용비율(장애인근로자 중 60% 이상, 제5조 각 호의 품목은 장애인근로자 중 30% 이상)</p> <p>1) 장애인근로자 및 중증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을 확인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다.</p> <p>① 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 산정방법 : (장애인근로자/전체근로자) × 100%</p> <p>② 중증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 산정방법 : (중증장애인근로자/장애인근로자) × 100%</p> <p>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생산시설이 공공기관과 계약 시 생산 시설 소속 근로자 외의 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고용승계 후 6개월 이내에 장애인근로자 및 중증장애인근로자 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p> <p>라.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가입 등</p> <p>1) 사업장의 대표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p> <p>2) 사업장의 대표자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지 못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으로 지정받아야 한다.</p>
<p>장애인근로자 생산 공정 참여율 (총 근로시간 50%)</p>	<p>가. 장애인근로자 생산 공정 참여율을 확인하는 산식은 다음과 같다. 생산 공정 참여율 : (장애인근로자 근로시간/전체근로자 근로시간) × 100%</p> <p>나. '가'의 근로시간은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근무한 시간</p>

항목	세부내용
이상)	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생산 여부	<p>가. 직접생산의 정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직접생산”이란 신청일 기준 생산 공장에서 해당품목의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필요한 시설, 설비, 생산 인력 및 전문기술인력, 제품 생산 및 판매에 필요한 자격 등을 갖추고 해당 품목을 직접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특정업체로부터 원부자재를 구입하여 완제품의 형태로 동 업체에 납품하는 경우 직접생산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p>나. 생산 공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품목 관련 업종에 대한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공장등록증명으로 확인한다. 다만, 건축법 등의 이유로 공장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으로 같음한다. 2) 생산 공장의 협소로 인해 설립승인 지역 내 생산 공장을 추가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임차계약서, 임차료 지급 여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법인등기부등본상 등재 여부 등 관련 서류가 확인되어야 한다. 3) 생산 공장의 실 소재지, 사업장명, 대표자 등이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명’, ‘공장등록증명서’, ‘영업신고증’ 등 관련서류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단, 명칭이 불일치할 경우 해당 명칭이 생산시설 명의임이 관련 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4) 임차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접생산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생산시설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부내역, 생산시설 재무제표 상 보증금 등재여부, 소유자의 등기부등본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임차료 지원을 통해 생산시설의 운영법인 명의로 임차한 경우로서 운영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부내역, 운영법인 재무제표 상 보증금 등재여부, 소유자의 등기부등본 등이 확인되거나, 운영법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생산시설에서 임차료를 납부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임대인이 생산시설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지 아니하더라도 임대공장에서 생산하는 품목과 동일 업종 또는 유사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③ 해당 생산시설이 운영하는 생산공장에 다른 사람 명의의 사업장이 중복 등록되어 있거나, 생산공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④ 생산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인 등 생산시설과 무관한 제3자가 부담하는 경우 ⑤ 타 업체의 사무실 또는 공장과 명확히 분리되어 있지 않거나, 생



항목	세부내용
	<p>산시설이 타 동종 업체의 공장 또는 사업장 내부에 칸막이 설치 등을 통해 형식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경우</p> <p>⑥ 생산공장을 무상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만, 생산공장의 소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생산시설의 운영법인 등에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p> <p>⑦ 타 업체의 제2공장 또는 지점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p> <p>5) 기증의 경우, 기증 관련 서류로 이를 확인하고 공증인의 공증이 있어야 하며 건물등기부에 생산시설의 소유로 등재되어야 한다. 단, 조건부 기증 등 형식적인 기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p> <p>6) 동일 소재지에 복수의 자가 생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각각의 생산공장이 벽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각각의 출입구가 있어야 한다.</p> <p>7) 사업자등록증명상 '업태' 및 '업종'란에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해당 품목 관련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p> <p>다. 생산 설비의 구비 및 운영</p> <p>1) 생산·검사설비의 구매 또는 설치 증빙서류(계약서, 지급내역, 생산시설 재무제표 상 자산등재 등)를 기초로 현장의 설치 설비와 대조 확인하여 일치하여야 한다.</p> <p>2) 해당 품목의 직접생산에 필요한 설비를 반드시 구비하여야 하며, 생산시설 소재지에 동 설비가 설치 및 가동이 되어야 하고, 생산시설 명의를 구입에 따른 증빙서류, 생산시설 재무제표상 자산등재 등을 통해 해당 시설의 설비임이 증빙되어야 한다.</p> <p>3) 임차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하지 아니한다.</p> <p>① 생산시설 명의를 임대차계약서와 임차료 납부내역, 생산시설 재무제표상 보증금 등재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p> <p>② 임대인이 생산시설의 임직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경우</p> <p>③ 생산설비를 타 업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p> <p>④ 생산설비 임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대인 등 생산시설과 무관한 제3자가 부담하는 경우</p> <p>⑤ 생산설비를 무상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단, 생산설비의 소유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있는 경우는 제외</p> <p>4) 기증의 경우, 기증 관련 서류로 이를 확인하고 공증인의 공증 및 생산시설 재무제표 등에 등재되어야 한다. 단, 조건부 기증 등 형식적인 기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p> <p>5) 생산설비 가동 여부는 전기요금 납부내역, 유류사용내역 등으로 확인</p>

항목	세부내용
	<p>되어야 한다. 단, 수주물량 미비 등으로 인해 전기요금 납부내역, 유류사용내역 등이 없는 경우 현장 확인시 생산설비의 가동 여부가 확인되어야 한다.</p> <p>라. 전문기술인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품목의 특성과 관련한 전문기술인력이 있어야 한다. 단, 해당 품목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일 경우, 동 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고시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서 정한 생산인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전문기술 인력의 보유 여부는 생산시설의 대표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여부, 정상적인 임금지급내역, 생산 과정에의 참여여부,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 여부 및 경력 보유 여부, 생산설비의 취급가능 여부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단, 전문기술인력을 일용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p>마. 생산 공정별 직접생산 여부 확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산시설의 생산인력, 생산설비, 원부자재 등을 활용하여 해당 품목을 직접생산하고 있는지 여부가 생산 공정별로 현장 확인되어야 한다. 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의 생산품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수급과 관련하여 원·부자재 수불관리대장, 매입장, 지출기안, 대금지급 통장 내역, 외주가공서류 등 일체의 관련 서류 및 업무처리 명목이 생산시설 명목과 일치하여야 하며, 해당 품목별로 원부자재 구매실적이 확인되어야 한다. 3)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의 생산품 생산·판매와 관련하여 생산품 재고관리, 판매관리, 매출장, 생산일지, 수입기안, 수입대금 통장내역 등 일체의 관련 서류 및 업무처리 명목이 생산시설의 명목과 일치하여야 하며, 해당 품목별로 생산·판매실적이 확인되어야 한다. 4) 직접 생산 관련 서류의 비치 여부 및 일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생산시설의 명목으로 처리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 경우 운영법인 등과 생산시설의 회계가 명확히 분리되어야 한다. <p>바. 제조물품 등의 완제 여부 및 기타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타 업체 등에서 제조된 반제품 또는 완제품 등을 시설·설비 구축 및 가동 없이 단순히 조립 공정 등 노동력에 의존하여 완성하는 것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2) 해당품목의 제조·판매 등을 위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표시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인·허가,



항목	세부내용
	<p>면허, 등록, 신고, 표시 등이 생산시설 명의로 되어있어야 하고,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표시 등의 대상을 법인으로 한정하는 경우 동 인·허가, 면허, 등록, 신고, 표시 등이 생산시설의 운영법인 명의로 되어 있어야 한다.</p> <p>3) 타 업체 등과 형식적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생산시설의 생산설비·작업장 등이 타 업체와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부적합으로 처리할 수 있다.</p> <p>4) 생산시설 운영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동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인건비, 원부자재구입비 등)를 제3자로부터 지급받을 경우 이사회 의결, 정상적인 대출 등을 통해 확인되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무상·임의지급 등은 부적합으로 처리한다.</p> <p>5) 생산품목별 납품실적 등이 확인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생산·납품한 경우 부적합으로 간주 처리할 수 있다.</p> <p>6) 물품의 경우 해당물품 또는 포장지에 생산시설 명의로 제조·판매원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해당품목의 특성상 생산시설 명의로 표시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p>

2. 미국

미국은 중증장애인의 직업기회를 제공하고 조달(procurement)을 통해 연방정부에 물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빌리티원 프로그램(AbilityOne Program)을 실시하고 있다(AbilityOne, 2023).

미국에는 약 500개의 비영리단체(nonprofit agencies)이 미국 전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어빌리티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어빌리티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원하는 영리단체(profit agencies)는 어빌리티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있는 비영리단체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아 정부에 판매해야 한다.

재빗-웨그너-오데이법(Javits-Wagner-O'Day Act)은 어빌리티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비영리단체의 주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재빗-웨그너-오데이법(Javits-Wagner-O'Day Act)에 의하면 어빌리티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비영리단체의 총 직접 노동시간 중 최소 75%는 반드시 시각장애인(blind) 혹은 중증장애인

(significant disabilities)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직접 노동(direct labor)이란 상품 작업준비, 상품 제조, 상품 포장을 위한 모든 근로활동이나 서비스(예를 들어, 음식서비스, 경비서비스, 전화교환서비스 등) 제공과 관련된 직접적인 노동 활동을 의미한다. 그러나 수퍼비전, 행정업무, 감독, 배송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어빌리티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원하는 비영리단체는 시각장애인전국산업(National Industries for the Blind, NIB 혹은 소스어메리카(SourceAmerica®) 중 하나에 가입해 제휴해야 한다. NIB와 SourceAmerica®은 어빌리티원 위원회(AbilityOne Commission)가 지정한 주요비영리단체(Central Nonprofit Agencies)이다. 비영리단체는 가입한 주요비영리단체에 프로그램 수수료(Program Fee)를 납부하며 프로그램 수수료는 어빌리티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요비영리단체의 예산으로 사용된다. 프로그램 수수료는 매 계약의 판매 수입에 대한 비율(percentage)이며 위원회에서 정한 비율 이상 초과할 수 없다(U.S. AbilityOne Commission, 2023).

1) 어빌리티원 판매자(AbilityOne Distributors) 허가를 위한 주요 규정

위원회로부터 공식적인 어빌리티원 판매자로 승인받기 위해서는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U.S. AbilityOne Commission, 2023).

- 판매자는 어빌리티원 제품을 주문받은 경우 본질적동일(Essentially the Same, ETS) 제품 대신 어빌리티원 제품을 자동적으로 대체할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 판매자는 매년 최소 \$5,000의 판매를 유지할 것을 약속한다.
- 판매자는 허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어빌리티원 제품을 연방계약, 일반서비스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GSA) 물품 일람표 등에 포함시킨다.
- 판매자는 상용 제품이 어빌리티원 제품과 본질적으로 동일(Essentially the Same, ETS)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상용 제품을 일반서비스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GSA) 물품 일람표,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DoD) 전자물, 이-커머스 사이트, 연방기관의 소매 등을 통해 연방 계약을 체결하여 연방고객에게 판매하지 않는다.



- 판매자는 매 분기 말일까지 어빌리티원 제품의 총판매를 보고한다(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2) 어빌리티원 판매자 허가와 관련된 세부 기준

(1) 일반사항

어빌리티원(AbilityOne)의 허가를 받은 판매자는 의무 조달리스트 제품을 연방 고객에게 전매하며 어빌리티원 프로그램(AbilityOne Program)을 대표한다. 판매자는 어빌리티원의 모든 기준과 규정을 준수한다.

- 신규 판매자는 어빌리티원 위원회(AbilityOne Commission)에 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신청서 제출은 위원회에 의한 등록 허가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 위원회로부터 공식 허가에 대한 연락을 받기 전에는 판매자는 어빌리티원 제품을 판매하거나 고객에게 어빌리티원 제품을 통보할 수 없다.
- 어빌리티원(AbilityOne®)은 미국 어빌리티원 위원회의 공식 등록 마크이다. 어떠한 형태(인쇄물, 전자적 형태 등)로 등록 마크를 출력,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위원회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 SKILCRAFT®은 시각장애인전국산업(National Industries for the Blind, NIB)의 공식 등록 마크이다. 어떠한 형태(인쇄물, 전자적 형태 등)로 등록 마크를 출력,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NIB로부터 승인받아야 한다. 연방정부 이외의 시장에서 SKILCRAFT 등록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허가는 NIB로부터 반드시 승인받아야 한다.
- 모든 신규로 허가된 판매자는 반드시 허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어빌리티원 교육을 의무적으로 완료해야한다. 어빌리티원은 판매자들이 어빌리티원의 제도, 절차,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강력히 독려한다.

(2) 독점적 지위

판매자는 어빌리티원의 독점적 원칙을 준수한다. 예를 들어, 만일 상용 제품이 어빌리티원 제품과 본질적으로 동일(Essentially the Same, ETS)¹⁾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상용 제품을 일반서비스청(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GSA) 물품 일람표, 국방부(Department of Defense, DoD) 전자물, 이-커머스 사이트, 연방기관의 소매 등을 통해 연방계약을 체결하여 연방고객에게 판매하지 않는다.

- i. 판매자는 어빌리티원 제품을 주문받은 경우에는 상용 ETS 제품을 교체할 수 없다.
- ii. 판매자는 어빌리티원 제품을 주문받은 경우 상용 ETS 제품 대신 어빌리티원 제품을 자동적으로 대체할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 a. 자동 폐쇄 및 대체 기능은 허가일로부터 45일 혹은 초기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시행되어야 한다.
 - b.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판매자는 폐쇄 및 대체 시스템 상황과 진행여부를 반드시 증명해야하며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허가 위반이며 최대로 허가 취소가 가능하다.
- iii. 판매자는 상용 ETS 제품 구매 요청이 어빌리티원 제품으로 이행된 경우에는 고객에게 통보해야 한다.

(3) 계약적용

- i. 허가일로부터 45일 이내 혹은 초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판매자는 위원회 담당자의 검토 및 어빌리티원 프로그램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 제품 리스트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로 위원회는 판매자 제품 리스트 검토를 상시 요청할 수 있다.
- ii. 허가일로부터 45일 이내 혹은 초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판매자는 해당 어빌리티원 제품을 발매해야 한다.
 - a. 어빌리티원 제품을 계약에 따라 발매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으로 위원회에 연락해야 한다.
 - b. 허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해당 어빌리티원 제품을 업로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허가 위반에 해당하며 허가정지를 할 수 있다.

1) 본질적으로 동일(Essentially the Same, ETS)이란 외형, 기능, 성능 면에서 어빌리티원 조달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의미하는 용어이다. 만약 상업적으로 구매가능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어빌리티원의 조달 목록에 있는 제품과 본질적으로 동일(ETS)하다고 간주되는 경우에는 연방 고객은 반드시 어빌리티원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그리고 연방 정부 계약자는 허가받은 어빌리티원 판매자가 아닌 경우에는 이러한 제품을 공급할 수 없다.



- iii. 판매자는 연방기관과 체결하는 어떠한 종류의 장래 계약에 대해 서면으로 반드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iv. 어빌리티원 제품 리스트는 분기별로 검토, 업데이트, 공표된다. 모든 판매자는 제품의 추가, 삭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신규 제품 등록 및 기타 수정사항을 적절한 시간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허가 위반에 해당한다.

(4) 마케팅 및 판매

판매자는 연방정부의 개별 상품 카탈로그나 홍보지와 같은 제품 마케팅 자료는 ETS 제품을 홍보하고 촉진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판매자는 비ETS 상품과 동등한 수준에서 어빌리티 제품을 홍보 및 촉진해야 한다.

- i. 판매자 등록을 위한 신청 초기와 허가를 받은 후에도 ETS 검토를 위해 판매자는 전자 제품 카탈로그 파일(스프레드시트, 데이터베이스 등)을 제출해야 한다.
- ii. 고객을 위한 모든 종류의 인쇄본 카탈로그는 인쇄하기 전에 위원회에 최소 2주 전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iii. 판매자는 온라인 전자 카탈로그를 제작하여 어빌리티원 제품이 검색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위원회는 연방고객 및 어빌리티원 제품의 분리된 링크 설계를 권고한다.
- iv. 판매자는 매 분기 말일까지 어빌리티원 제품의 총판매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판매 보고는 엑셀 파일을 활용해 조달제품시리얼번호(National Stock Numbers, NSN), 판매 단위(unit sold), 총판매액을 포함한다.

(5) 가격 및 배송

판매자는 가격 및 어빌리티원 제품의 배송에 대한 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i. 판매자는 도매 가격보다 35%이상 가격을 인상하여 부과할 수 없다. 만일 제품이 도매업자로부터 지원받은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위원회가 제시한 결정

- 가격보다 55%를 초과할 수 없다.
- ii. 만일 판매자가 위원회의 최고한도보다 낮은 가격한도를 요구하는 연방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따른다.
 - iii. 위원회는 판매자가 위원회가 정한 정상가격 이하로 어빌리티원 제품을 전매하는 경우 판매자의 판매활동을 중단시킬 권한을 가진다. 이러한 할인가격은 어빌리티원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이다.
 - iv. 판매자는 일반적인 사업 제품이 배송되는 수준으로 연방 고객에게 시간내에 제품을 배송해야 한다. 판매자는 고객에게 위원회가 구분한 표준단위 (standard unit of issue) 이상으로 최소주문양(minimum order quantity)을 제한할 수 없다.

(6) 주문 및 판매

- i. 판매자는 제조비영리단체(manufacturing nonprofit agencies)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위원회로부터 승인받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승인된 도매업자를 통해 어빌리티원 제품을 주문해야한다.
- ii. 만일 도매 단계에서 일시적 재고부족 상태가 어빌리티원 제품의 적시 조달을 어렵게하는 경우에는 판매자는 위원회로 자문을 요청해야 한다.
- iii. 직접 주문이 허용된 경우 판매자는 제조비영리단체(manufacturing nonprofit agency)를 통해 어빌리티원 제품을 주문해야하며 직접주문 절차에 따라 주문해야 한다.
- iv. 위원회는 분기별로 초기가격(origin prices) 및 최종가격(destination prices)을 공표한다. 직접주문을 승인받은 판매자는 초기가격 혹은 최종가격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나 중복 가격은 선택할 수 없다.
- v. 백지운송(drop shipment)에 대한 내용은 주문지급절차(Ordering, Payments procedures)에서 확인할 수 있다.
- vi. 비영리단체(nonprofit agencies)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제품의 경우 NIB는 조달목록에 있는 다자생산 비영리단체의 NSN을 위해 할당율을 관리한다. 판매자는 NIB가 정한 할당율을 준수해야 한다. NIB가 요청하는 경우 판매자는 할당이 공정한지 증명하기 위해 할당결과 보고서를 매 분기별로 NIB에 제출해야 한다.



(7) 허가의 제한

- i. 비정부기관 판매: 어빌리티원 제품이 연방정부에만 판매할 수 있는 제품 라이선스에 구속되지 않는 한 대다수의 어빌리티원 제품은 상용고객에게 판매할 수 있다.
- ii. 타 판매자를 대상으로하는 판매: 위원회는 어빌리티원 허가 도매업자(AbilityOne Authorized Wholesalers)를 대상으로하는 기준 및 규정을 제시한다. 어빌리티원 제품을 연방 고객이 아니라 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도매업자로 일하기 원하는 판매자는 반드시 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 iii. 위원회는 첫 1년 내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판매자와의 사업적 관계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첫 1년 이후에는 판매자가 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판매자와의 사업적 관계를 취소할 수 있다.

(8) 실적

판매자의 실적은 위원회가 실시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평가한다.

- i. 위원회는 분기별로 판매자가 본 문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위원회 규정 준수여부를 평가한다.
- ii. 판매자는 매년 최소 \$5,000의 판매를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허가가 되면 최소 판매량을 평가하기 위한 최초 연례 기간은 초기 두 분기 이후부터 개시된다.
- iii. 판매자는 실적 논의를 위해 위원회의 연례 검토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 iv. 우수 판매자 지정은 연방 회계 연도 이전에 위원회가 제시한 기준에 따라 매년 수여된다.

3. 일본

1) 일본의 우선구매제도

일본은 1949년 제정된 신체장애자복지법 제25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이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특정 물품 구입 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적정가격에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특정 품목 이외에도 명시적 요구가 있을 경우 후생성장관이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었다. 그러나 위 법률은 1993년 장애인기본법으로 통합되며 제도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였다가, 2013년 '장애인우선조달추진법'이 제정되어 실효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나운환, 2014).

2013년 4월 1일부터 「장애인 취업기관으로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물품 조달추진에 관한 법률」(国等による障害者就労施設等からの物品等の調達の推進等に関する法律)(이하 '조달추진법'이라 함)을 도입하였다. 이 법의 취지는 장애인이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하여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시설에서 일자리를 확보하고, 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달추진법의 목적은 제1조에서 규정되어 있다. 제1조 “ 이 법은 국가, 독립행정법인,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독립행정법인 등에 의한 장애인 취업시설 등으로부터 물품 및 용역의 조달의 추진 등에 관하여 국가 등의 책무를 명시하는 것과 동시에 조달과 관련하여 기본 방침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취업시설등의 수주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이를 통하여 장애인 취업 시설이 공급하는 물품과 용역에 대한 수요 증진 등을 도모하여 장애인 취업시설에서 취업하는 장애인, 재택 취업장애인등의 자립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조달추진법의 목적은 첫째,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은 장애인 취업시설 등의 수주 기회를 확보하기 위해 기본방침, 조달방침 등을 명시하는 것, 둘째, 이에 따라 장애인 취업시설 등이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에 대한 수요의 증진, 셋째, 장애인 취업 시설에서 취업하는 장애인, 재택 및 취업장애인등의 자립 촉진 기여로 요약할 수 있다.

2) 일본의 우선구매제도의 구성 및 범위

일본의 우선구매를 총괄관리 하는 기관은 후생노동성이며 우리나라와 달리 기업에서 신고하여 운영되는 기업신고제로 운영하고 있다. 신고제로 운영하기 때문에 정직함을 기본으로 하여 1년에 한 번 장애인 여부를 제출하도록 하게 되어있지만,



별도의 현장 확인 절차가 없어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같은 별도의 업무수행기관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구매이행의 의무가 있는 기관 및 지자체에게 지침을 시달, 구매정보를 제공하면 이에 기관 및 지자체는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후생노동성에 제출하여야하는 등 업무를 지원 하고있다. 구매계획에 따라 구매기관에서 생산시설에 물품구매를 요청하고 장애인 취업시설 등은 중증장애인 직업 훈련과 생산품 생산 및 판매 과정을 직접 구매이행 기관과 진행하거나 재택취업장애인의 경우 취로 지원단체가 중간에서 연계를 해주어 국가에서는 취로지원단체를 통해 계약하게 된다.

장애인생산품의 범위는 조달추진법률 제2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취업시설’에서 생산한 물품 및 용역을 장애인생산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장애인취업시설에 대한 정의는 조달추진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에서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에 규정된 장애인지원시설, 지역활동지원센터 또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사업을 실시하는 시설, 제2호에서는 장애인의 지역에서 작업활동의 장소로서 필요한 비용을 받는 시설, 제3호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중증신체장애자, 지적장애자 또는 정신장애자인 노동자를 다수 고용하는 사업소로 법령으로 정하는 곳에서 생산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장애인생산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물품과 용역은 다음 <표 II-2>와 같이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II-2> 일본 우선구매 대상 물품과 용역 범위

구분	품목	구체적 예
물품	사무용품, 서적	필기구, 사무용품, 용지, 봉투, 고무도장, 서적, 토너 카트리지 등
	식료품, 음료품	빵, 도시락·주먹밥, 면류, 가공식품, 과자류, 음료, 커피·차, 쌀, 채소, 과일 등
	소품잡화	의복·신장품·장신구, 식기류, 회화·조각, 목공품·금공품·자수품·도자기·유리제품, 장난감·인형, 악기, 각종 기념품, 청소용품, 방재용품, 비상식량, 꽃모종 등
	기타물품	책상·테이블, 의자, 캐비닛, 사물함, 침구, 기물대, 플랜터, 휠체어, 지팡이, 점자블록, 조명기구 등 상기 이외의 물품
용역	인쇄	포스터, 전단지, 리플렛, 보고서 및 책자, 명함, 봉투 등의 인쇄
	클리닝	클리닝, 린넨서플라이 등
	청소 및 시설관리	청소, 제조작업, 시설관리, 주차장관리, 자판기관리 등

구분	품목	구체적 예
	정보처리, 테이프 (情報処理・テープ 起こし)	홈페이지 작성, 프로그래밍, 데이터 입력 및 집계 등
	음식점 등의 운영	매점, 레스토랑, 찻집 등
	기타서비스, 노무	구분·발송, 봉투 포장·포장, 세척, 해체, 인쇄물 접기, 물수건류 접기, 필경, 문서 폐기(슈레더), 자원 회수 분리 등

또한 재택장애인,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재택취업 지원 단체를 정의하여 이들 시설에서 생산하는 물품이나 용역까지도 장애인생산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조달추진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의 정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회사의 사업소 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① 신체장애인,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노동자의 수가 5명 이상, ②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비율이 20% 이상, ③ 해당 사업장의 장애인 노동자에서 차지하는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비율이 30% 이상, 위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장애인생산품이다. 우선구매 대상이 되는 시설이나 기관의 유형은 다음 <표 II-3>과 같다.

<표 II-3> 일본 우선구매 대상 시설 및 기관 유형과 정의

구분	정의
a	<p>취로계속지원 A형, B형</p> <p>「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률」(2005년 법률 제123호. 이하 「장애인종합지원법」이라 한다.) 제5조제14항에 규정되어 일반기업 등에서의 취업이 곤란한 사람에게 일할 장소를 제공하는 동시에 지식 및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소</p>
	<p>취업이행지원</p> <p>「장애인종합지원법」제5조제13항에 규정되어 일반기업 등으로의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일정기간 취업에 필요한 지식 및 능력 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는 사업소</p>
	<p>생활개호</p> <p>「장애인종합지원법」 제5조제7항에 규정되어 항상 개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간, 목욕, 배설, 식사의 개호 등을 실시하는 동시에 창작활동 또는 생산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소</p>



구분		정의
	장애인지원시설	「장애인종합지원법」제5조제11항에 규정된 장애인지원시설(취업이행 지원, 취업계속지원, 생활개호를 실시하는 것에 한한다.
	지역활동지원센터	「장애인종합지원법」제5조제27항에 규정되어 창작적 활동 또는 생산 활동의 기회 제공, 사회와의 교류 등을 실시하는 사업소
	소규모작업소	「장애인기본법」(1956년 법률 제84호)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작업활동의 장으로서 동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필요한 비용을 조성받고 있는 시설
b	공동수주창구 (共同受注窓口)	수주 내용을 대응 가능한 복수의 장애 복지 서비스 사업소에 알선·중개하는 업무를 실시한다.
	특례자회사	장애인 고용에 특별한 배려를 하여 고용되는 장애인 수나 비율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서 후생노동대신의 인정을 받은 회사
c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	중증장애인 등을 상시근로자로 다수 고용하거나 계속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재택취업장애자	자택 등에서 물품 제조, 역무 제공 등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장애인
	재택취업지원단체	재택 취업 장애인에 대한 원조 업무 등을 하는 단체

4. 시사점

생산시설 지정 및 재지정 심사기준과 관련해 해외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우리나라 심사기준 개선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지정 및 재지정 심사기준의 명확한 분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정 심사기준과 재지정 심사기준의 구분이 모호해 재지정을 위해 초기에 제출했던 심사서류를 중복해 제출하고 있다. 이에 재지정 심사준비에 시설 담당자들은 많은 행정적 소모를 하고있어 재지정 업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지정 이후 자격 유지를 위해 매 분기마다 어빌리티원 제품의 총판매 상태나 비영리단체 상태를 보고한다. 이처럼 시설 유지와 관련된 명확한 기준만을 요구하여 초기 심사때 제출한 행정서류의 중복을 피하고있어 업무가 간소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행정서류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을 통해 생산시설로의 진입 및 유지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일본의 경우 여러 종류의 행정서류 제출을 통해 생산시설 지정을 승인하

기보다는 장애인근로자 수를 충족하는 경우 생산시설로 신고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근로자 수를 충족하여 유지하는 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간주하고 있어 생산시설 유지를 위한 타 행정노력보다는 장애인 고용과 직업재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우리나라에서도 생산시설 지정 및 재지정에 있어 장애인근로자의 고용 유지나 개선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셋째, 재지정의 경우 매출액이나 시설 발전과 관련된 사항만 중점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지정을 위해 시설 적격성, 장애인근로자 현황, 시설 및 장비 현황 등 다양한 항목을 심사하고 있으나 재지정의 주요한 목적이 시설 지정 이후 장애인 직업재활 달성 및 생산성 발전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설 발전과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판매액을 중점적으로 재심사 과정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시설은 매 분기 말일까지 제품의 총판매 상태를 보고하며 매년 최소 \$5,000의 판매를 반드시 유지하도록하며 시설의 매출과 관련된 상황을 중점적·주기적으로 어빌리티원 위원회에 공개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항목 중 재지정의 경우에는 시설의 매출이나 생산력 발전 정도를 검증에 초점을 두어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III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담당자 포커스그룹인터뷰

1. 연구 설계 및 질문의 개발

본 연구에서는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지정 및 재지정 심사기준 개선 사항을 질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 방법을 활용하였다. 질문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FGI 연구방법 절차에 따라 질문의 원칙을 숙지하고 연구 목적을 명확히 한 후 그러한 목적에서 질문이 벗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책임연구자는 질문의 초안을 작성하고 상호검증을 하였으며 연구의 자문위원들에게 질문에 대한 자문을 추가적으로 요청하였다. 자문위원들의 자문을 거쳐 질문의 최종안이 도출되었으며 <표 III-1>과 같은 구체적인 질문을 개발하였다.

<표 III-1> FGI 질문 내용

영역	주요질문
신청자의 적격성	-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 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정신보건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에 한하고 있는데 신청자격 기관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비용	- 중증장애인근로자" 기준에 시각장애인(1~2급), 지체장애인(1~2급), 청각장애인(2급), 신장장애인(2급), 뇌전증장애인(2급), 간장애인(1~2급), 안면장애인(2급), 장루·요루장애인(2급) 등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3급 장애인을 포함해야 합니까? - 해당 품목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근로를 제공하는 장애인이 최소 1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까? - 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70% 이상) 및 중증장애인 고용비율(장애인 근로자 중 60% 이상, 제5조 각 호의 품목은 장애인근로자 중 30% 이상)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까?
장애인근로자 생산 공정 참여율 (총 근로시간)	- 장애인근로자 생산 공정 참여율 (총 근로시간 50% 이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까?

영역	주요질문
50% 이상)	
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생산 여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생산^{*)}이란 신청일 기준 생산 공장에서 해당품목의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필요한 시설, 설비, 생산 인력 및 전문기술인력, 제품 생산 및 판매에 필요한 자격 등을 갖추고 해당 품목을 직접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 생산공장 인정 범위와 관련해 수정할 내용이 있습니까? - 생산·검사설비의 구매 또는 설치 증빙서류(계약서, 지급내역, 생산시설 재무제표 상 자산등재 등)를 기초로 현장의 설치 설비와 대조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 일용직을 전문기술 인력의 보유로 간주할 필요가 있습니까? - 제조물품 등의 원재 여부 및 기타사항과 관련해 수정할 내용이 있습니까?
재지정 관련 추가 문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지정 심사 간소화를 위한 인센티브나 추가 문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장기간 중증장애인근로자 고용 유지, 우수 기관 선정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합니까?

2. 자료수집 과정 및 절차

질적연구는 양적연구와 달리 소수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하는 연구방법으로써 연구목적에 대한 가장 바람직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참여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Morse & Field, 1995). FGI는 질적연구방법의 하나로써 소수의 선정된 참여자가 그룹에 참여함으로써 특정 서비스, 상품, 개념 등에 대해서 본인들의 견해, 의견, 사고, 태도 등을 이야기하고 토론한다. 질문은 상호 역동적인 그룹 내에서 제시되며 이러한 그룹 환경 내에서 각 참여자들은 본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공개적으로 밝히며 그룹의 다른 참여자들에게 제시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자는 그룹에서 제시된 주요한 내용이나 사실들을 기록 및 요약하며 이를 위해 연구자는 효율적이며 전문적인 답변을 얻기 위해 참여자를 신중하게 선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FGI 연구는 양적 연구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그룹내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이 필요할 때, 복잡한 행동이나 동기를 밝히고 이해하고자 할 때 활용 가능하다(Creswell, 2003).



본 연구에서는 생산시설 지정·재지정 심사기준 개선 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생산 시설 담당자를 모집하였다. 생산시설 담당자는 최소 5년 이상 경력이 있고 현재 지정받은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 선정하였다. FGI는 2023년 5월에 진행하였으며, 참여자는 공동연구원, 한국장애인개발원 우선구매심사팀의 협조로 모집하였다. 참여자들은 대상자 선정기준에 적합한 생산시설 담당자 18인으로 구성하였다. FGI에 참석한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III-2>과 같다. FGI는 총 5회 실시하였으며 1회에 3인-4인이 참석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방법,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하였고 각 인터뷰에 소요된 시간은 2시간 정도였다.

<표 III-2> FGI 참여자 일반 사항

순번	성별	나이	시설특성
참여자1	남성	40대	장애인보호작업장(주요제품: 가스차단기, 방향제, 소독방역)
참여자2	여성	40대	장애인보호작업장(주요제품: CCTV, 조명기구)
참여자3	남성	40대	장애인복지단체(주요제품: 배전반·제어장치)
참여자4	남성	50대	장애인근로사업장(주요제품: DM발송, 마스크, 사무용지류, 인쇄물)
참여자5	남성	40대	장애인근로사업장(주요제품: PE봉투, 비닐봉투류)
참여자6	남성	40대	장애인보호작업장(주요제품: 사무용지류, 화장지류)
참여자7	여성	50대	장애인보호작업장(주요제품: 문서파일류, 살균소독수, 세차, 소독방역, 청소)
참여자8	여성	40대	장애인복지단체(주요제품: 피복류)
참여자9	남성	40대	장애인복지단체(주요제품: CCTV, 인쇄물, 조명기구)
참여자10	남성	50대	장애인근로사업장(주요제품: 공연서비스)
참여자11	남성	40대	장애인보호작업장(주요제품: 제과, 제빵)
참여자12	여성	40대	장애인보호작업장(주요제품: 물비누, 비누, 화장품)
참여자13	여성	40대	장애인복지단체(주요제품: 인쇄물)
참여자14	남성	50대	장애인보호작업장(주요제품: 제과, 제빵)
참여자15	남성	50대	장애인복지단체(주요제품: 인쇄물, 재생토너카트리지, 판촉물인쇄, 현수막)
참여자16	남성	40대	장애인근로사업장(주요제품: 공기청정기, 보일러, 온수매트, 선풍기)
참여자17	여성	40대	장애인보호작업장(주요제품: 배전반·제어장치, 약품투입기, 전화장비네트워킹연결장치, 하수처리장치및구성품)
참여자18	여성	40대	장애인근로사업장(주요제품: CCTV, 가구류, 배전반·제어장치)

인터뷰는 참여자들로부터 생산시설 지정·재지정 심사기준 개선안과 관련된 새로운 진술이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자료의 포화시점까지 진행되었다. 책임연구자는 참여자들이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히 일부 참여자가 토론을 독점하거나 일방적인 주장을 하지 않도록 하였고 모든 참여자가 연구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FGI 회의 중에 참여자들이 논의한 내용은 모두 녹음하였고 이후 분석을 위해 녹취록을 작성하였다.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생산시설 지정·재지정 심사기준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모색하기 위해 시설 담당자로부터 나온 자료를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현상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높이기 위해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였다(Creswell, 2003). 책임연구자는 FGI 논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분석하면서 의미 있는 단어·문장·단락을 선택하여 개방코딩(open coding)을 하였다. 유사한 문장과 단락으로 자료를 구분하고 구분된 문장에서 하위주제를 도출하고 최종적으로 주제를 도출하여 명명하였다(Creswell, 2003).

4. 조사 결과

자료 분석결과 생산시설 지정·재지정 심사기준의 문제점과 관련해 4개의 주제와 12개의 세부주제가 도출되었다. 구체적인 분석결과는 <표 III-3>과 같다.

<표 III-3> FGI 분석결과

주제	세부주제
주제1: 초기 지정 심사기준의 강화	(1) 비장애 사회적협동조합의 신규지정 제한 (2) 영리법인의 생산시설 지정 제한 (3) 다수 시설 신규 지정에 의한 과도한 경쟁 완화
주제2: 재지정 행정절차 간소화 및 행정절차 개선	(1) 재지정 중복 서류 간소화 (2) 3년인 재지정 기간 확대



주제	세부주제
주제3: 재지정 인센티브 도입	(1) 장애인 고용율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 (2) 매출액 및 장애인근로자 임금 비율에 의한 인센티브 (3) 장기 재인증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주제4: 시설 운영 기준 개선 및 지도 개선	(1) 사후점검 강화 (2) 설비 기준 완화 (3) 불법행위에 대한 패널티 적용 (4) 3개월인 장애인 채용 기간 확대

1) 주제1: 초기 지정 심사기준의 강화

(1) 비장애 사회적협동조합의 신규지정 제한

사회적협동조합에서 직업재활시설을 등록해 생산시설로 지정받고 있으나 사회적협동조합은 장애인과 무관한 경우가 많아 생산시설로 지정을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일정 기간 장애인 관련 목적사업 실시 경력도 없이 생산시설로 지정받고 있다. 장애인복지단체는 최소 2년 목적사업을해야 생산시설을 지정받고 있으나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 조항이 없다. 특히 사회적협동조합은 어떠한 제한 규정없이 직업재활시설을 등록하고 있으며 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민법에서 말하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아닌 경우에 대해 지정 제한이 필요하다.

'현재 다수의 비장애 사회적협동조합이 생산시설로 신규 등록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이 아니라 복지부 고시만 수정해도 사회적협동조합이 지정 받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복지단체 등록은 상당히 까다롭지만 사회적협동조합은 상대적으로 손쉽게 등록할 수 있어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 생산시설 분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참여자2).'

(2) 영리법인의 생산시설 지정 제한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주식회사가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해 지정 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즉 비영리조직이 비영리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영리조직이 비영리 환경에 들어와 사업을 하는 것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영리 주식회사의 생산시설 지정은 우선구매 환경을 교란시킬 여지가 있어 주의깊게 관찰해야 한다.

'최근에 영리를 목적으로하는 주식회사가 직업재활시설을 등록해 생산시설로 신규 지정받는 경우도 있다고합니다. 이들은 기존 영리회사에서 가지고 있던 네트워크를 활용해 계약을 쉽게하거나해서 기존 장애인 비영리 법인과 비교해 수익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리법인이 비영리 환경에 들어와 활동하는 것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참여자3).'

(3) 다수 시설 신규 지정에 의한 과도한 경쟁 완화

현행 지정 기준을 완화해 다수의 시설을 지정하기보다는 지정 기준은 현행을 유지 혹은 강화하고 재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지정 기준이 강화되어 중간에 재지정에서 탈락한 시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의 고용 안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재지정에 탈락한 시설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은 이직을하거나 실업 상태에 처할 수 있다.

'현재 연간 100개의 신규 시설이 지정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현장의 어려움을 잘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참여자10, 참여자17).'

2) 주제2: 재지정 행정절차 간소화 및 행정절차 개선

(1) 재지정 중복 서류 간소화

중소기업청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와 생산시설 지정 받을 때 심사기준 중 장애인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는 서로 동일하다. 직접생산 인 증은 2년마다, 생산시설 재지정 심사는 3년마다 받고 있어 행정 준비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 행정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지정의 경우 직접생산 인 증을 받은 생산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 관련 사항(장애인 고용율, 장애인 임금 지급 정도 등)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직접생산 인 증 기준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만 재지정 심사 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재지정 받을 때 제출하는 서류가 너무 많고 다른 곳에서 인 증 받은 서류는 그 자체로 인정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중기청 직생인 증은 2년마다, 생산



시설 인 증은 3년마다 실시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서류 준비하느라 시간을 많이 소비하고 있습니다(참여자4, 참여자7, 참여자11, 참여자13).'

'재지정 받을 때 임대인의 총사업실적 내역서나 생산설비 구입내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는 것은 많은 행정적 소모가 있습니다. 직접생산 여부 검증과 관련해 중기에서 직접생산 여부를 인증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항목으로 재검사를 받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생산 여부 이외의 장애인고용율이나 기타 기준만을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참여자13, 참여자14).'

(2) 3년인 재지정 기간 확대

현재 재지정을 3년 마다 실시하는데 재지정 기간을 5년 정도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는 3년마다 실시하는 재지정 준비에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어 재지정 기간을 조정해 재지정 행정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경감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법인 위탁 심사도 5년임을 고려한다면 현재 3년은 다소 짧아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현장에서는 3년마다 돌아오는 재지정 기간이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시설 재지정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3년마다 준비하려면 한 1-2달은 전 직원들이 야근해야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담이 됩니다(참여자12, 참여자15).'

3) 주제3: 재지정 인센티브 도입

(1) 장애인 고용률 증가에 대한 인센티브

지정 후 3년간 장애인 고용율이 증가하는 시설에 대해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30억 이상인 경우 장애인을 1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3년간 지속적으로 장애인 고용율이 상승하는 경우, 3년간 평균적으로 장애인 고용율이 상승하는 경우 등 장애인 고용율 상승의 성과를 보이는 시설을 대상으로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생산시설에서 3년간 평균적으로 혹은 첫해와 비교해 장애인 고용율이 조금이라도 올라가는 경우 인센티브를 주어 재지정 면제를 해주면 행정적인 번거로움을 줄

일 수 있습니다(참여자5, 참여자10, 참여자13).'

(2) 매출액 및 장애인근로자 임금 비율에 의한 인센티브

매출액이 높은 시설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200만원을 지급하도록하거나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시설에는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특히 매출액이 상승한다는 것은 장애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도 상승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임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시설에 대해 적절한 인센티브 혹은 재지정 면제를 해야 한다. 특히 일정 매출액 이상인 시설의 경우 장애인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수준을 고려해 적절한 임금이 장애인근로자에게 지급되는지를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우선구매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하면 매출액이 올라가면 당연히 장애인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도 상승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그러지 못한 시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상승하고 임지급하는 임금 역시 상승하는 생산시설에게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참여자15, 참여자18).'

(3) 장기 재인증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재지정을 장기간 받은 시설은 재지정 심사를 일부 기간 동안 면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재지정을 2회 혹은 3회 연속으로 받은 경우에는 이후 재지정을 1회정도 면제하여 재지정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여 실무 담당자들의 업무 가중을 경감시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장기간 재지정을 받은 시설은 상대적으로 운영을 양호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간주하여 재지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저희는 벌써 재인증을 2번 받았는데 다음 번에는 재인증을 면제해 주면 좋겠습니다. 매번 재인증 서류가 거의 동일하고 장기간 재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시설 운영은 별 문제가 없다고 간주해도 될 것 같아 재인증 1회 정도 면제는 가능하지 않을까합니다(참여자12).'

4) 주제4: 시설 운영 기준 개선 및 지도 개선

(1) 사후점검 강화



생산시설의 전체적인 매출액과 근로하고 있는 장애인 수 등을 고려해 비위행위나 부적절한 운영이 의심되는 경우 적절한 사후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현장에서는 장애인근로자 수와 매출액 간의 불일치가 의심되는 시설이 일부 존재하여 건전한 시설 운영과 우선구매제도의 발전을 위해서 수시 사후점검을 활용하여 시설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적은 수의 장애인으로 40억 이상 매출액을 달성하는 시설이 과연 장애인 노동만으로 그러한 매출액을 달성하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사후점검이나 불시검사는 예고하지 않고 방문해 실시해야 합니다(참여자2, 참여자7).'

(2) 설비 기준 완화

신규 품목을 지정받은 경우 중소기업청 기준으로 자동화 설비를 마련하면 품목당 배정 인원을 축소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현재는 품목당 5인을 배정해야하지만 자동화 설비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최소 인원 요건을 낮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중소기업청 기준에 의한 설비가 고가인 경우가 많으며 그러한 고가의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설비들이 있다. 품목별로 중소기업청 기준으로 설비를 확인할 수도 있으나 실제 활용 부분은 다를 수 있어 고가 장비 설치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 고가 장비나 중소기업청 기준 장비를 그대로 준용하기 보다는 다른 설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가 설비를 임대하거나 구독하는 경우에도 시설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유사한 장비나 대여 등을 통해 구비한 장비 등도 인정해야 합니다(참여자10).'

'지역사회 내에서 무상임차를 받아 운영할 수도 있는데 단순히 무상임차의 경우 직생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무상임차가 적법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직생으로 인정해야 합니다(참여자9).'

(3) 불법행위에 대한 패널티 적용

근로자 임금 체불,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중과실을 범한 시설에 대해서는 패널티

를 적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특히 임금 체불, 고의적인 근로기준법 위반 등은 장애인 고용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강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패널티를 받으면 일정 기간 재지정을 받지 못하도록 해 시설 운영에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패널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심한 비위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적절한 벌칙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상습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시설에 경고나 운영상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참여자16).'

(4) 3개월인 장애인 채용 기간 확대

현장에서는 발달장애인 중 직업적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애인을 채용하기가 어려우며 장애인 중 일부는 갑작스럽게 퇴사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러나 3개월 이내에 장애인을 재고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채용 기한을 유연성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이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러한 중증장애인과 같은 숙련된 능력을 갖춘 신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기가 어렵다.

'최근 급격한 인구 감소를 비롯, 지역별 특성에 따라 장애인 고용에 물리적, 환경적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 고용의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현실적으로 시각 1-2급은 특수한 현장이 아니면 일반적 작업장에서 근로 활동하기에 한계가 있어 채용하기가 어렵습니다(참여자18).'

'매년 시설이 신규로 등록되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대기업에서도 시설을 만들어 다수의 장애인들이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경향도 심해 중소 시설에서 적절한 인력을 구하기가 더욱더 어렵습니다(참여자12).'



IV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지정 및 재지정 심사기준 마련을 위한 델파이 조사

1. 델파이 조사

본 연구는 델파이(Delphi) 기법을 적용하였다. 델파이기법은 선행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분산된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하나의 의견으로 수렴해가는 방법으로 다른 집단 의사결정 방법에 비해 장점이 많아 활용이 높은 편이다.

2. 델파이 조사참여자 선정기준

델파이 조사가 다른 여론조사와 다른 점은 특정 주제에 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추출한다는 점인데 델파이 참여자들은 전문가를 대표(권성훈, 2007)하기 때문에 전문가 선정은 델파이기법 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참여자 선정에서 이러한 두 가지를 고려하여 전문성의 범주를 제시하여 선정기준을 정한 후 전문가 선택을 위한 참여자 선정절차를 거쳤다.

먼저, 참여자의 선정기준은 학계 전문가(대학 및 연구기관)는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제도 관련 연구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교수 및 박사학위 소지자로 하였으며, 현장 전문가(사업수행기관)는 중증장애인 우선구매제도 운영 경력이 최소 (3)년 이상인 자로 의도적 표집을 통해 델파이 조사 대상을 선정하였다.

응답 회수율, 패널 크기와 관련한 선행연구 결과를 감안하여 전문가 15인을 선정하였고, 전화 혹은 이메일을 통해 패널 의뢰와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하였다. 그 결과 학계 6명, 현장전문가 9명 총 15인의 전문가가 패널로 선정되었다.

〈표 IV-1〉 델파이 전문가 리스트

연번	번호	직위/직급	성별	연령	경력기간
1	학계1	교수	남	60대	20년 6개월
2	학계2	교수	여	50대	23년
3	학계3	교수	남	60대	33년
4	학계4	미가입	남	50대	-
5	학계5	교수	남	50대	10년
6	학계6	교수	남	50대	18년9개월
7	현장1	현장전문가	남	40대	16년
8	현장2	현장전문가	남	50대	27년4월
9	현장3	현장전문가	여	40대	23년
10	현장4	현장전문가	남	50대	3년 1개월
11	현장5	현장전문가	남	50대	20년
12	현장6	현장전문가	남	60대	7년
13	현장7	현장전문가	남	40대	12년 7개월
14	현장8	현장전문가	여	40대	8년 7개월
15	현장9	현장전문가	여	50대	20년 3개월

3. 델파이 조사 도구

델파이 조사에서 사용된 도구는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연구 및 현장 전문가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토대로 연구자가 구성한 구조화된 설문지이다. 본 연구에서 델파이 조사 실시 목적은 현행 생산시설 지정·재지정 심사기준을 이해하고 연구자가 제시한 지정·재지정 심사기준안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최초 1라운드 설문지는 기존 연구와 사업 담당자 그리고 현장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도출한 심사기준(안)으로 구성되었으며 2라운드는 1라운드 결과에 의해 3개 요인이 제거되고 1개 요인이 추가되었다. 결과적으로 설문지 문항 수는 〈표〉과 같이 1라운드 설문지 14문항, 2라운드는 1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생산시설 지정·재지정 심사기준(안)에 대한 내용 타당도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므로 리커트 5점 척도로 질문하였다.



〈표 IV-2〉 델파이 설문지 문항 구성

구분	문항구성	문항 수		비고
델파이 1라운드	재지정 심사 관련 행정 간소화	2문항	총 14 문항	문헌, 현장 전문가 집단 인터뷰(FGI) 결과 도출된 요인으로 구성
	재지정 심사 인센티브	4문항		
	기타 기준 개정	4문항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의견(오픈형)	4문항		
델파이 2라운드	재지정 심사 관련 행정 간소화	3문항	총 11 문항	델파이 1라운드 결과에 따라 수정, 변경, 추가 요인 반영
	재지정 심사 인센티브	1문항		
	기타 기준 개정	3문항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의견	4문항		

1) 델파이 1라운드 설문지

델파이 1라운드 설문지는 완전개방형으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사참여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을 줄이고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구조화된 틀로 구성하기도 한다(안정선, 2007). 본 조사에서도 이를 고려하여, 델파이 1라운드 설문지는 기존 문헌과 현장 전문가 심층 면접을 근거로 구조화하여 그 내용이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지정 및 재지정 심사기준에 적합한가를 리커트 5점 척도로 질문하였으며, 제시된 요인에 대한 패널 의견과 추가요인 확보는 개방형 문항으로 설문하였다.

1라운드 설문지는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5차례 심층면접(FGI)결과를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폐쇄형 설문지의 한계를 보완하고 패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추가의견을 기술하거나, 항목에 대해 수정, 삭제,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앞서 이론적 배경에서 고찰한 문헌 근거와 함께 정리하면 다음 〈표 IV-3〉과 같다.

〈표 IV-3〉 델파이 1라운드 설문지 주요 내용

주제	주요내용	출처
재지정 심사 관련 행정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지정 심사 시 행정 간소화 의견 - 재지정 심사 시 '재지정심사 신청양식', '근로자 임금대장 및 산정방식', '재무제표 5종',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식' 다섯 가지 서류 제출 시 타당도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증 같음에 대한 타당도 	-심층면접조사 (FGI)
재지정 심사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시설 재지정 심사 1회 한정 면제해 주기 위한 요건에 대한 타당도 등 	
기타 기준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채용 시 재지정 기준에 3개월 이상 유예 조항 추가에 대한 타당도 - 재지정 기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것에 대한 타당도 - 임금체불, 장애인차별, 노동법 위반 등 명백한 비위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 추가에 대한 타당도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8조(행정처분)의 수정 및 검토 의견 -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의3 제1항(매출액의 산정 및 과징금 부과기준)의 수정 및 검토 의견 -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제25조(업무정지, 과태료)의 수정 및 검토 의견 	

2) 델파이 2라운드 설문지

델파이 2라운드 설문지는 1라운드 응답 결과를 근거로 구성되었다. 즉, 1라운드에서 본인 응답과 다른 패널들의 응답 결과를 제시하고, 1라운드에서 적합성 평가 기준 이하인 요인은 제거하고 추가된 요인을 문항에 포함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였다.

델파이 1라운드 결과에 따른 최종 삭제 요인을 살펴보면, 재지정 심사 인센티브 항목에서는 편의시설 설치, 인권교육 실시, 우선구매 교육이수 등의 항목이 삭제되었다. 반면 추가된 항목은 재지정 심사 관련 행정 간소화 항목에서 재심사시 제출하



는 필요 서류항목(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사업계획서, 근로계약서, 세부품목 신청 서류,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장애인 증명서)에 대한 필요 서류 타당화 항목이 추가되었다. 한편, 내용이 수정된 문항은 재지정 심사 인센티브 항목 중 '장애인 추가고용'에 대한 내용이 일부 수정되었다. 또한,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의견(4문항)이 오픈형 문항에서 리커트 5점 척도로 변경되었다.

2라운드 설문도 각 문항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및 재지정 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참여자들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해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델파이 내용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내용타당도 비율(CVR)을 따랐다. 내용 타당도 비율(CVR)은 Lawshe(1975)가 제시한 응답자 수에 따른 내용타당도 비율(CVR) 최소값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표 IV-4〉 응답자 수에 따른 내용타당도 비율(CVR)의 최소값

응답자 수	CVR 최소값
5	.99
6	.99
7	.99
8	.75
9	.78
10	.62
11	.59
12	.56
13	.54
14	.51
15	.49
20	.42
25	.37
30	.33
35	.31
40	.29

자료: Lawshe(1975)에서 인용

〈표 IV-5〉 델파이 1라운드 결과에 따른 추가 요인

연번	구분			추가·수정요인
	공통구성요인	하위요인		
1	재지정 심사 관련 행정 간소화	재심사 제출서류	→	재심사시 제출하는 필요 서류항목 추가
2		장애인 추가고용		일부 내용 수정
3		행정처분의견	행정처분, 과징금, 지정취소 및 업무처리기준, 과태료 부과 기준	→

〈표 IV-6〉 델파이 1라운드 결과에 따른 삭제 요인

연번	구분			삭제요인
	공통구성요인	하위요인		
1	재지정심사인센티브	편의시설 설치	→	삭제
2		인권침해 예방 교육실시	→	삭제
3		우선구매 교육 이수	→	삭제

〈표 IV-7〉 델파이 1라운드 결과 수정 및 삭제 요인 설명

요인	부적합·추가·변경 요인 설명	결과
재지정 심사 관련 행정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지정 심사에서는 향후 사업계획서 필요 -근로계약서, 장애인 증명서, 직접생산을 증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서류, 최초 지정 신청 시 제출한 서류 중 변경 사항이 있는 서류필요 - 지정심사전 최소 1년이상 인자로 장애인비율 산정, 안정적 근로 자성 유지를 위해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필요 - 기술표준원 분류가 변경되면 중기청의 세부품목도 변경되므로 재지정 기간동안 변경될수 있기 때문에 세부품목 신청 서류 필요 	재심사시 제출하는 필요 서류항목 추가
재지정 심사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련 교육은 법정무교육으로 기본적으로 실시하는 내용이므로 면제 요건으로 부적합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장애인 고용을 보장하지 않음 -임대시설의 경우 편의시설 동기에 대한 어려움이 있고, 직업재활 시설의 경우 법정편의시설 준수를 평가 받고 있어 인센티브 대상으로는 맞지 않음 	삭제



3) 델파이 조사 절차

본 조사는 다음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3년 0월 0일 전문가 의견조사를 시작으로 0월 0일부터 0월 0일까지 델파이 조사 총 2라운드가 진행되었으며, 모든 조사과정은 이메일로 이루어졌다.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예비조사(pilot test)로 요인설명 및 응답요령에 대한 이해, 응답 소요시간 등을 확인한 후 이를 본 조사에 적용하였다.

단 계	내 용	진행일자
현장전문가 심층면접조사 (FG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총 0명 • 현장전문가 0명 	0.0.0 ~ 0.0.0
	↓	
델파이 1라운드 설문지 작성	델파이 1라운드 설문지 작성	
	↓	
델파이 1라운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총 15명 • 학계 6명/ 현장전문가 9명 	
	↓	
응답분석 및 설문지 작성	• 1라운드 응답분석 및 2라운드 설문지 작성	
	↓	
델파이 2라운드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자 총 15명 • 학계 6명/ 현장전문가 9명 	
	↓	
최종분석	• 2라운드 조사에 모두 참여한 15명의 응답을 분석하여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지정 및 재지정 심사기준 도출	

[그림 IV-1] 델파이조사 절차

델파이 조사는 아이디어 수집단계인 1단계와 전문가들의 반대의견을 확인하는 4 단계를 생략하고 2단계로만도 충분(김형수, 1996)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의견

조사를 우선 진행하고 델파이 조사는 요인도출의 목적만으로 진행하였다. 델파이 조사에서는 각 요인들의 상대적 중요도 즉, 2라운드까지만 진행하였다. 1라운드와 2라운드에서는 설문지에 이전 라운드에서의 본인 응답범주를 알려주고 문항별 패널들의 응답 즉 평균값을 제시함으로써 본인 응답을 객관적으로 다시 검토할 수 있게 하였다.

4) 델파이자료 분석방법

델파이 조사의 자료는 SPSS 28.0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조사참여자에 대한 일반적 사항 및 구성영역 각각에 대한 문항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빈도분석,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를 실시하였다.

5) 연구결과

본 장에서는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및 재지정 심사기준을 도출하였다.

(1) 델파이 조사 결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및 재지정 구성요인은 델파이 2라운드 조사결과로 도출되었다. 따라서 델파이 각 라운드 결과와 조사결과와의 추정이 타당한가를 보기 위한 의견수렴 및 내용타당도 측정결과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도출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및 재지정 심사기준을 제시하였다.

① 델파이 1라운드 결과

델파이 1라운드는 현장 전문가 심층면접조사(FGI)를 통해 수렴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및 재지정 심사기준 개선 요인 도출을 위해 실시하였다. 1라운드는 총 10문항에 대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학계와 현장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10개의 항목 중 채택된 문항은 재지정 심사 심사의 경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인증



을 받은 품목에 한해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인증을 받은 품목에 한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증』으로 갈음하는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과, 3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장애인 채용증빙에 대한 유예 조항에 대한 타당도를 묻는 항목 그리고 행정처분 규정 추가 3개 항목이었다. 그러나 학계와 현장 전문가 간 문항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로 학계 전문가와 현장 전문가를 구분하여 델파이 결과를 살펴보았다.

학계 전문가의 경우 채택된 항목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증』으로 갈음 항목과, 재지정 면제 인센티브 항목 중 장애인 추가고용, 행정처분 규정 추가, 생산시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체크리스트 항목 시설 4가지였으며, 현장 전문가의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증』으로 갈음 항목과 장애인채용증빙 유예조항 총 2가지 항목이었다.

두 그룹과 채택항목과 전체 그룹 채택항목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증』으로 갈음 항목은 학계와 현장 전문가 모두에서 타당하다고 응답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채용증빙 유예조항은 현장전문가, 행정처분규정 추가 항목은 학계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IV-8〉 델파이 1라운드 분석 결과(전체)

문항구성	평균	표준 편차	CVR
			.49 이상
재심사 서류 간소화	3.56	0.56	0.47
직접생산 확인_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증 갈음	4.06	0.62	0.87
재지정 심사 인센티브_추가고용	3.13	1.05	0.07
재지정 심사 인센티브_편의시설 설치	2.56	1.03	-0.33
재지정 심사 인센티브_ 인권교육	2.50	1.40	-0.20
재지정 심사 인센티브_우선구매 교육이수	3.06	1.28	-0.07
기타 기준 재정_장애인 채용증빙 유예	3.81	0.80	0.73
기타 기준 재정_재지정5년연장	3.25	1.36	0.07
기타 기준 재정_행정처분규정추가	3.75	1.31	0.73
기타 기준 재정_체크리스트	3.63	0.99	0.47

<표 IV-9> 델파이 1라운드 분석 결과 (현장 전문가)

문항구성	평균	표준 편차	CVR
			.78 이상
재심사 서류 간소화	3.78	0.67	0.33
직접생산 확인_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증 같음	4.44	0.73	0.78
재지정 심사 인센티브_추가고용	2.78	0.97	-0.56
재지정 심사 인센티브_편의시설 설치	2.44	1.01	-0.56
재지정 심사 인센티브_인권교육	2.89	1.45	-0.11
재지정 심사 인센티브_우선구매 교육이수	3.11	1.36	-0.33
기타 기준 재정_장애인 채용증빙 유예	4.22	0.97	0.78
기타 기준 재정_재지정5년연장	3.44	1.74	0.11
기타 기준 재정_행정처분규정추가	3.44	1.42	0.56
기타 기준 재정_체크리스트	3.44	1.01	0.11

<표 IV-10> 델파이 1라운드 분석 결과 (학계 전문가)

문항구성	평균	표준 편차	CVR
			.99 이상
재심사 서류 간소화	3.83	0.41	0.67
직접생산 확인_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증 같음	4.17	0.41	1.00
재지정 심사 인센티브_추가고용	4.17	0.41	1.00
재지정 심사 인센티브_편의시설 설치	3.17	0.98	0.00
재지정 심사 인센티브_인권교육	2.33	1.37	-0.33
재지정 심사 인센티브_우선구매 교육이수	3.50	1.22	0.33
기타 기준 재정_장애인 채용증빙 유예	3.83	0.41	0.67
기타 기준 재정_재지정5년연장	3.50	0.55	0.00
기타 기준 재정_행정처분규정추가	4.83	0.41	1.00
기타 기준 재정_체크리스트	4.50	0.55	1.00



② 델파이 2라운드 결과

델파이 2라운드는 1라운드 설문에서 4개의 요인이 제거되고 1개 문항은 추가, 1개 문항은 수정되어 총 11문항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졌다. 새로 추가 수정된 문항을 포함하여 다시 타당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는 <표 >과 같다.

먼저 전체를 대상으로 한 항목별 결과를 살펴보면 재심사를 위한 서류간소화는 1차 델파이 조사 보다 내용타당도(CVR)값이 낮았으나 ①재지정심사 신청양식, ②근로자 임금대장 및 산정방식 ③재무제표 5종 이외 ①중증장애인생산물생산(서비스)사업계획서, ②근로계약서, ③세부품목 신청서류, ④4대 보험 가입자 명부, ⑤장애인 증명서 등의 추가서류를 보완할 경우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집단 모두 재심사시 행정서류 간소화를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CVR=1.00). 서류 간소화에 ‘매우타당하지 못함’, ‘타당하지 못함’, ‘보통’으로 응답한 패널 중 추가 되어야 할 서류를 다 중응답으로 알아본 결과, 4대보험가입자명부와 장애인증명서가 각각 5명(29.4%)으로 가장 많고, 근로계약서 3명(17.6%), 중증장애인생산물사업계획서와, 세부품목 신청서 2명(11.8%)으로 나타났다.

이외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증』으로 같음 항목과 장애인채용증빙 유예조항, 행정처분규정추가 총 3가지 항목과 일부 내용이 수정된 재지정 심사 인센티브 항목의 ‘장애인 추가고용’항목은 1차 델파이 조사결과와 같이 타당하다고 조사되었다(CVR=.060). 그 이외 델파이 1라운드 학계응답에서 타당하다고 조사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근로자의 안전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안)항목은 타당도 기준에 미치지 못했다.

전체 대상 타당도 응답 수준을 그룹별로 살펴보면, 현장 전문가의 경우 ‘장애인 추가고용’항목이 타당도 기준에 미치지 못했으며, 학계 전문가의 경우 3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하는 장애인 채용증빙에 대한 유예 조항 항목에 대한 타당도 기준이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근로자의 안전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안)항목에 대해서는 모든 대상자가 타당하다고 응답하였다(CVR=1.00). 한편, 델파이 2차 조사에서 추가된 행정처분강화, 과징금강화, 지정취소업무기준강화, 과태료 부과기준 강화 4가지 항목의 경우는 현장 전문가 그룹의 타당도는 매우 낮았으나 학계 전문가 집단의 경우 응답자 수가 6명으로 내용타당도 비율(CVR)이 매우 엄격하여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못했지만 현장 전문가 그룹 대비 내용타당도 비율(CVR)이 높게 나타나 행정처분 등에 관한 견해 차이가 다소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체적으로 1차 조사보다 각 항목의 표준편차가 축소된 것으로 볼 때 각 요인의 중요도에 대한 조사자들의 평점 범위가 좁아져 합의점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델파이 2라운드에서는 1라운드에 비해 CVR이 조금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표 IV-11〉 재지정 심사시 추가로 필요한 서류(다중응답)

항목	빈도	백분율	전체케이스 백분율
중증장애인생산품사업계획서	2	11.8%	33.3
근로계약서	3	17.6%	50.0
세부품목신청서	2	11.8%	33.3
4대보험가입자명부	5	29.4%	83.3
장애인증명서	5	29.4%	83.3
합계	17	100%	283.3

〈표 IV-12〉 델파이 2라운드 분석 결과(전체)

문항구성	평균	표준 편차	CVR
			.49 이상
서류간소화	3.38	0.82	0.07
추가서류추가재심사	3.94	0.41	1.00
중소기업직접생산확인	4.00	0.59	0.87
수정문항_추가고용	3.63	0.74	0.60
채용유예	3.81	0.79	0.73
행정처분규정추가	3.88	0.99	0.87
체크리스트	3.63	1.06	0.47
행정처분강화	3.25	0.99	0.07
과징금강화	3.31	0.83	0.20
지정취소업무기준강화	3.44	0.89	0.33
과태료부과기준강화	3.31	0.91	0.07



〈표 IV-13〉 델파이 2라운드 분석 결과 (현장 전문가)

문항구성	평균	표준 편차	CVR
			.78 이상
서류간소화	3.56	1.0138	-0.11
추가서류추가재심사	4.33	0.5000	1.00
중소기업직접생산확인	4.33	0.7071	0.78
수정문항_추가고용	3.67	0.8660	0.33
채용유예	4.22	0.9718	0.78
행정처분규정추가	3.89	1.1667	0.78
체크리스트	3.56	1.2360	0.11
행정처분강화	3.44	1.1304	-0.11
과징금강화	3.33	0.7071	-0.11
지정취소업무기준강화	3.56	0.8819	0.11
과태료부과기준강화	3.22	0.6667	-0.33

〈표 IV-14〉 델파이 2라운드 분석 결과 (학계 전문가)

문항구성	평균	표준편차	CVR
			.99 이상
서류간소화	3.67	0.52	0.33
추가서류추가재심사	4.00	0.00	1.00
중소기업직접생산확인	4.17	0.41	1.00
수정문항_추가고용	4.17	0.41	1.00
채용유예	3.83	0.41	0.67
행정처분규정추가	4.50	0.54	1.00
체크리스트	4.33	0.51	1.00
행정처분강화	3.50	0.83	0.33
과징금강화	3.83	0.98	0.67
지정취소업무기준강화	3.83	0.98	0.67
과태료부과기준강화	4.00	1.10	0.67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및 재지정 심사기준 개선을 위해 현재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 및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현행 재지정 심사기준과 관련해 여러 수정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재지정 심사 관련 행정 간소화

1) 생산시설 관련 공공정보의 연계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

아래 <표 V-1>은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재지정 심사를 위해 제출하고있는 필요 서류를 나열한 것이다. 서류는 크게 법정서류, 추가서류로 구분되며 추가서류는 신청자의 적격성 판정, 근로자 관련, 직접생산 관련 서류로 구성 되어있으며 세부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의 양이 방대하다. FGI 및 델파이패널은 재지정 심사를 위한 행정 서류의 간소화를 지적하였다.

<표 V-1>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재지정 심사 제출 서류 목록

구분	증빙서류	유형 (필수여부)
법정서류	· 법인설립허가증	· 장애인복지단체(필수)
	·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 장애인직업재활시설(필수)
	·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필증	· 정신질환자 재활훈련시설 (직업재활시설)(필수)
	· 정관 또는 규약	· 공통(필수)
	· 근로자 임금대장 및 산정방식	· 공통(필수)
	· 재지정심사 신청양식	· 공통(필수)
추가 신청자 적격성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공통(필수)
	· 법인의 장애인복지 관련 고유목적사업 실적 내역	· 장애인복지단체(필수)



구분	증빙서류	유형 (필수여부)
류 근 로 자 관 련	· 세부품목 신청 서류	· 공통(필수)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 공통(필수)
	· 전체(장애인비장애인 전체) 근로자 근로계약서	· 공통(필수)
	· 장애인증명서	· 공통(필수)
	· 장애인 직무기술서	· 공통(필수)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공통(필수)
	· 시설 대표자의 경우 국세청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출퇴근 기록부(최근 1개월)	· 공통(필수)
	· 급여대장, 급여 이체내역, 급여이체 통장 사본(최근 1개월)	· 공통(필수)
	·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예산신청 및 승인 공문 및 상세(붙임 양식 포함)	· 장애인직업재활시설(필수) · 정신질환자 재활훈련시설 (직업재활시설)(필수)
	· 지방자치단체 임면보고 승인 공문 (지자체→생산 시설)	
	· 품목별 전문기술인력 이력서(필수), 자격증(해당 시)	· 공통(이력서는 필수)
· (해당 시) 일용근로자 관련	· 공통	
· (해당 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서	· 공통	
추가서류 직접생산 관련	· 사업자등록증명	· 공통(필수)
	· (해당 시) 공장등록증명서	· 공통
	· 일반건축물대장	· 공통(필수)
	· (해당 시) 생산시설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또는 전대차 계약서)	· 공통
	· (해당 시) 생산시설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체내역 및 통장사본	
	· (해당 시) 생산시설 사업장 월 임차료 이체내역 및 통장사본(최근 1개월)	
	· (해당 시) 생산공장 임대인 사업자 등록증(최근 1 개월) · 국세청 사실증명(총 사업자 등록내역)	
	· (해당 시) 위수탁협약서	· 직업재활시설 · 재활훈련시설(직업재활시설)
	· 전기요금 고지서, 이체내역 및 통장 표지(최근 1 개월)	· 공통(필수)

구분	증빙서류	유형 (필수여부)
	·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또는 고정자산관리대장 또는 생산설비검사설비 구입 증빙 서류	· 공통(필수)
	· 재무제표 5종(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	· 공통(필수)
	· (해당 시) 생산검사설비 임대차계약서	· 공통
	· (해당 시) 생산검사설비 임차보증금 이체내역 및 통장 표지	
	· (해당 시) 생산검사설비 월 임차료 이체내역 및 통장 표지	
	· (해당 시) 기증 및 공증서	· 공통
	· 신청품목을 생산판매하기 위한 필수 인허가 서류 (예시) - 비누,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화장지: 위생용품제조업신고증 - 물티슈, 화장품: 화장품제조업 신고증 - 조영기구: KC인증서류, 검교정성적서 등 - 제과제빵, 김치: 영업신고증 - 청소: 위생용역업신고증 - CCTV: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필증 등	· 공통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서비스) 사업계획서	· 공통(필수)
	· 매입장매출장 (3개년도)	· 공통(필수)

현재 여러 공공기관에서는 생산시설 관련 정보를 보유 및 수집하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 관련 정보를 연계하여 재지정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정보 수집을 위한 추가적인 행정적 소비를 경감시킬 수 있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의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③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요청 가능한 정보의 종류나 근거 법률이 명확하지 않아 개별 정보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정보가 생산시설의 관리



및 재지정 심사에 필요하다.

-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가입 내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관한 자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에 관한 자료
-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에 관한 자료
-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에 따라 해당 납세자가 발급일 현재까지 총사업자등록한 내역
-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명에 관한 자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공장등록에 관한 자료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에 관한 자료
-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및 「상업등기법」 등에 따른 법인등기
- 「민법」 및 「주무관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 자료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에 관한 자료
-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출한 사업실적에 관한 자료

이러한 개별 정보의 요청을 위해서는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의2(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근거로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의4(자료의 요청)를 추가해 요청 가능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2) 재지정 신청 서류 축소

생산시설 재지정 심사를 위해 <표 V-1>과 같은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있으나 FGI 및 델파이조사결과 재지정 심사의 행정 간소화를 위해 <표 V-1>의 서류 중 ① 재지정심사 신청양식, ② 근로자 임금대장 및 산정방식, ③ 재무제표 5종(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

표 및 주석) 서류만을 제출하여 재심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필요한 경우 ① 중증장애인생산품사업계획서, ② 근로계약서, ③ 세부품목신청서, ④ 4대보험가입자명부, ⑤ 장애인증명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표 V-2〉 재지정 관련 서류 간소화(개정안)

<p>1. 재지정 신청자의 신청서류</p> <p>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시설이 재지정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아래 서류를 제출한다.</p> <p>① 재지정심사 신청양식</p> <p>② 근로자 임금대장 및 산정방식</p> <p>③ 재무제표 5종(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석)</p> <p>나. 재지정 심사를 위해 아래 서류 제출을 추가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p> <p>① 중증장애인생산품사업계획서</p> <p>② 근로계약서</p> <p>③ 세부품목신청서</p> <p>④ 4대보험가입자명부</p> <p>⑤ 장애인증명서</p>
--

3) 직접생산 확인 서류 대체

재심사 서류 중 직접생산 확인의 경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인증을 받은 품목에 한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증」으로 갈음하도록 하였다.

〈표 V-3〉 생산 공정별 직접생산 여부 확인(개정안)

<p>1) 생산시설의 생산인력, 생산설비, 원부자재 등을 활용하여 해당 품목을 직접생산하고 있는지 여부가 생산 공정별로 현장 확인되어야 한다.</p> <p>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의 생산품 생산을 위한 원·부자재 수급과 관련하여 원·부자재 수불관리대장, 매입장, 지출기안, 대금지급 통장 내역, 외주가공서류 등 일체의 관련 서류 및 업무처리 명의를 생산 시설 명의로 일치하여야 하며, 해당 품목별로 원부자재 구매실적이 확인되어야 한다.</p>
--



- 3)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의 생산품 생산·판매와 관련하여 생산품 재고관리, 판매관리, 매출장, 생산일지, 수입기간, 수입대금 통장내역 등 일체의 관련 서류 및 업무처리 명목이 생산시설의 명목과 일치하여야 하며, 해당 품목별로 생산·판매실적이 확인되어야 한다.
- 4) 직접 생산 관련 서류의 비치 여부 및 일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생산시설의 명목으로 처리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하며, 이 경우 운영법인 등과 생산시설의 회계가 명확히 분리되어야 한다.
- 5)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인증을 받은 품목에 한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증」으로 같음할 수 있다.

4) 재지정 심사 시 현장심사 면제

현재 서류심사 검토결과 적합시설을 대상으로 현장심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장심사의 목적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지정 관련 심사 기준 등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필요시 현장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하기도 하며(현장에서 즉시 제출 불가시 별도 지정기한 내 제출요구) 2인1조로 심사원을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를 포함시킨다.

일반적으로 현장심사는 심사원 소개, 현장심사 진행절차 및 기준 등 안내, 현장 준비 서류 검토 및 보고서 작성, 근로자 및 생산현장 확인, 심사종결의 과정으로 진행된다. 소요시간은 현장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2시간~3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현장심사로 인해 추가적인 행정적 소모가 발생할 수 있어 현장심사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제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① 지정 이후 소재지 변경 등의 변동 사항이 없는 시설, ② 유효기간 내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시설, ③ 기타 현장확인을 위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시설의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

2. 재지정 심사 인센티브

생산시설은 초기 지정을 받은 후 3년마다 재지정 심사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매년 실시되는 재지정 심사에 대한 행정인력 효율화 및 재지정 추가 심사의 간소화

를 목적으로 생산시설 재지정 심사를 면제해 주는 인센티브 요건에 대해 논의하였다.

고려 가능한 인센티브 요건으로는 ① 장애인근로자 혹은 중증장애인근로자를 추가 고용한 경우, ②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에 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 ③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유공 포상을 받은 경우, ④ 3년 동안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장애인근로자 채용의 인센티브 적용 가능성 및 실효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2023)의 생산시설 현황 내부 자료를 분석하여 중증장애인근로자와 장애인근로자로 구분하여 증감율(10%, 20%, 30%, 40% 등)을 제시하였다.

〈표 V-4〉 중증장애인근로자 증감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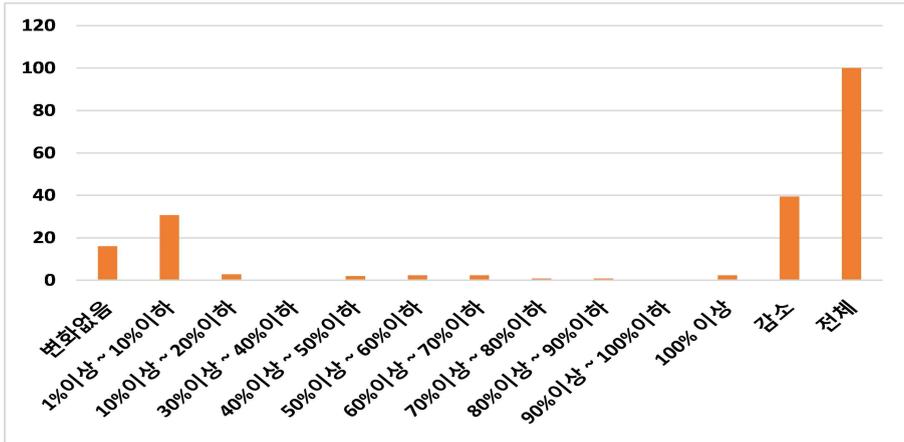
(단위: 개소, %)

	빈도	퍼센트
변화없음	104	16.1
1%이상 ~ 10%이하	198	30.7
10%이상 ~ 20%이하	18	2.8
30%이상 ~ 40%이하	2	.3
40%이상 ~ 50%이하	13	2.0
50%이상 ~ 60%이하	15	2.3
60%이상 ~ 70%이하	15	2.3
70%이상 ~ 80%이하	5	.8
80%이상 ~ 90%이하	5	.8
90%이상 ~ 100%이하	1	.2
100% 이상	15	2.3
감소	255	39.5
전체	646	100.0

생산시설의 2020년(4/4분기)대비 2023년 상반기 중증장애인근로자 증감율을 조사한 결과 1% 이상 10%이하가 198개소(30.7%)로 가장 많았고, 변화없음이 104



개소(16.1%), 10이상 20 이하가 18개소(2.8%)로 나타났다. 또한, 100%이상 증가한 사업체도 15개소(2.3%) 있었다. 반면, 감소한 사업체는 255개소로(39.5%)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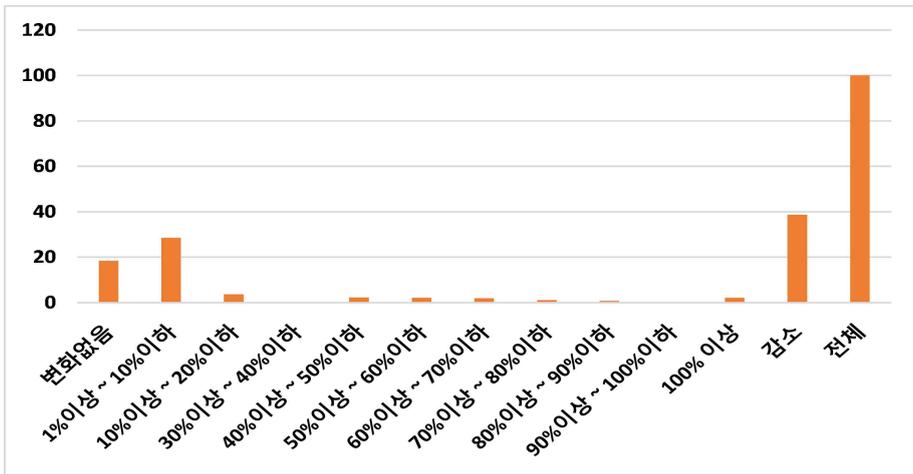


〈표 V-5〉 장애인근로자 증감율

(단위: 개소, %)

	빈도	퍼센트
변화없음	119	18.4
1%이상 ~ 10%이하	184	28.5
10%이상 ~ 20%이하	24	3.7
30%이상 ~ 40%이하	1	.2
40%이상 ~ 50%이하	15	2.3
50%이상 ~ 60%이하	14	2.2
60%이상 ~ 70%이하	12	1.9
70%이상 ~ 80%이하	7	1.1
80%이상 ~ 90%이하	5	.8
90%이상 ~ 100%이하	1	.2
100% 이상	14	2.2
감소	250	38.7
전체	646	100.0

생산시설의 2020년(4/4분기)대비 2023년 상반기 전체 장애인근로자 증감율을 조사한 결과 1%이상 10%이하가 184개소(28.5%)로 가장 많았고, 변화없음이 119개소(18.4%), 10%이상 20%이하가 24개소(3.7%)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100%이상 증가한 사업체는 14개소(2.2%)였다. 반면, 250개소(38.7%)는 감소하였다.



〈표 V-6〉 재지정 심사 면제 인센티브(개정안)

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지정 후 재지정 심사 면제를 위한 인센티브 방법으로 아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 ① 장애인근로자를 추가 고용한 경우
 - 지정(혹은 재지정) 이후 36개월간 추가 고용한 장애인근로자가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10/100인 경우(소수점은 버림)
 - 지정(혹은 재지정) 이후 36개월간 추가 고용한 장애인근로자가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20/100인 경우(소수점은 버림)
 - 지정(혹은 재지정) 이후 36개월간 추가 고용한 장애인근로자가 전체 장애인근로자의 30/100인 경우(소수점은 버림)
 - 추가 고용한 장애인근로자는 36개월간 평균하여 적용한다. 추가 고용한 장애인근로자의 최소 고용 기간은 18개월로 한다.
 - 추가 고용한 장애인근로자의 고용비율은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 추가 고용한 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 : 추가 고용한 장애인근로자 수/전체 장애인근로자 수 × 100
- ②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교통약자의 이



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에 의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경우

③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유공 포상을 받은 경우

④ 3년 동안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

나. 재심사 인센티브는 자발적이며 인센티브를 준수하지 않음에 어떠한 불이익은 없다.

3. 행정처분

1) 지정취소

현행 생산시설의 비위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검토한 결과 유사 지정·재지정을 실시하고 있는 타 부처에서 행해지는 기준과 비교해 약하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하여 행정처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에 의하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자격을 취득한 경우, 참여자격을 상실한 경우, 담합 등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자의 참여자격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업무 처리규칙 제24조(지원대상자 취소)에 의하면 기한내에 투자를 이행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신규고용의무 이행 및 인증을 기한 내에 받지 아니한 경우, 우대가점을 받아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업주가 우대가점 해당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무상지원금으로 투자한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 장애인의 출퇴근 편의를 위한 승합자동차 등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상태가 부실한 경우 등으로 연속하여 2회의 시정조치를 받은 이후에도 시정조치를 이행하여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무상지원금 지원대상자 취소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생산시설 지정취소 기준에 의하면 아래 위반의 경우 4차례 위반시 지정취소를 명하고 있다. 타 사례를 고려하여 4차례 위반에서 최소 3차례 위반시 지정취소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10조제1항제1호)
 나.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0조제1항제2호)
 1)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마. 법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0조제1항제6호)

〈표 V-7〉 생산시설 지정취소 기준(개정안)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개선명령	영업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나.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조제1항제2호	개선명령	영업정지 3개월	지정 취소
1)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지정 취소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때 또는 지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법 제10조제1항제3호	지정 취소		
라.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법 제10조제1항제5호	지정 취소		
마. 법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0조제1항제6호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지정 취소

2) 과징금

과징금의 비율과 관련해 현재 정하고 있는 과징금 비율을 타 사례와 비교해 강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과징금)에 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의 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확인받은 자,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여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자를 대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확인받은 경우는 100분의 3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생산확인을 받은 후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는 100분의 20, 공공기관의 장과 납품 계약을 체결한 후 하청생산 납품, 다른 회사 완제품 구매 납품 등 직접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하거나 직접 생산한 완제품에 다른 회사 상표를 부착하여 납품함으로써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는 100분의 10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과징금 기준에 의하면 아래의 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모두 100분의 5로 정하고 있어 최소 100분의 10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

-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법 제10조의2제1항)
- 2)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0조의2제1항)
- 3) 법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10조의2제1항)

〈표 V-8〉 생산시설 과징금 기준(개정안)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 1개월당 과징금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	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
2)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	제2호나목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
3) 법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	제2호다목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

3) 과태료

과태료의 경우 현행 기준에서는 법 제18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법 제23조제1항)에 1차 위반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3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법 제32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즉시 30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3조 관련)에 의하면 장애인 표준사업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차례 위반하여도 300만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운영하게 하거나 인증서를 대여한 경우에는 1차례 위반하여도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타 유사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기준을 고려하여 현행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즉, 법 제18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회차와 상관없이 즉시 최소 300만원을 과태료로 부과할 필요가 있다.

〈표 V-9〉 생산시설 과태료 기준(개정안)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18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조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	100	200	300
법 제18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300		



4. 기타 결론

1) 재지정 심사 기간 연장

본 연구의 FGI에 참여한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재지정 심사 기간인 3년을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비록 델파이조사에서는 재지정 심사 기간 연장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지는 않았으나 FGI에 참여한 다수의 전문가들에 의하면 현장에서는 3년마다 실시하는 재지정 준비에 많은 행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어 재지정 기간을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유사한 사례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생산시설 재지정의 경우에도 5년으로 연장하여 현장 생산시설 종사자의 재지정 행정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경감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2) 장기 재인증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본 연구의 FGI에 참여한 일부 전문가들은 재지정 심사 면제 인센티브로 장기 재지정 시설에 대한 재지정 심사 면제 인센티브를 제시하였다. 이에 대해 내부적으로 연구진 회의를 여러 차례 실시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진들은 단순히 장기간 재지정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에 부정적이었다. 이에 장기간 재지정 시설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는 배제하기로 하였다.

끝으로, 생산시설의 운영 및 발전과 관련해 본 연구에서 수행하지 못한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FGI에서 제시된 매출액 및 장애인근로자 임금 비율에 의한 인센티브 도입, 장기 재인증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사후점검 강화 방안 및 델파이패널이 제시한 불법 행위에 대한 강도있는 패널티 적용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한국장애인개발원 (202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안내.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Creswell, R. (2013). Research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s.

Delbecq, A., Van de Ven, A., & Gustafson, D. (1975). Group techniques for program planning: A guide to nominal groups and delphi process. Glenview, IL: Scott Foresman Company.

Lawshe, C. H. (1975). A quantitative approach to content validity. Personnel Psychology, 28(4), 563-575.

Murry, J. W. Jr & Hammons, J. O. (1995). Delphi: A versatile methodology for conducting qualitative research. The Review of Higher Education, 18(4), 423-236.

U.S. AbilityOne Commission (2023). AbilityOne program. retrived from <https://www.abilityone.gov> > abilityone_program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및 재지정 심사기준 개선 연구
포커스그룹인터뷰 전문가용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및 재지정 심사기준 개선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써 장애인정책 개선 방안 및 대안을 수립하고 개발된 정책집행에 따른 결과를 수집하고 평가하는데 기초가 되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포커스그룹인터뷰의 목적은 생산시설 지정·재지정 심사 경험을 이해하고 지정·재지정 심사기준 개정안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생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지정·재지정 심사 경험을 조사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생산시설 지정·재지정 심사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한 모든 응답은 오직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응답자에 관한 일체의 신상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히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문의 및
연락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연구개발팀 서원선 부연구위원
전 화 : 02-3433-0658
E-mail : wonsunseo@koddi.or.kr

I. 참여자 인적사항

1 성별	① 남	② 여	
2 나이	① 20세~29세 ② 30세~39세 ③ 40세~49세 ④ 50세~59세 ⑤ 60세~69세 ⑥ 70세 이상	3 운영 생산시설 종류 및 운영기간(중 복응답 가능)	①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년/월) ② 장애인직업재활시설(년/월) ③ 장애인복지단체(년/월) ④ 판매시설(년/월)
4 생산시설 유형	① 보호작업장 ② 근로시설 ③ 훈련시설	5 업종	① 농업, 임업 및 어업 ② 광업 ③ 제조업 ④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⑤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⑥ 건설업 ⑦ 도매 및 소매업
6 근로장애인 총 수	()명	7 시설 매출액	()원

II. 연구개요 및 참석자 소개(시작질문)

1. 본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2. 본 FGI 참석자를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3. 본 FGI의 진행방법(참여자 순번부여, 익명성 보장, 의견제시 방법, 의견제시 독점 금지 등)을 설명하겠습니다.

III. 생산시설 지정·재지정 관련 문제점 소개(도입질문)

1. 장애인 생산시설 현황을 간략히 소개하겠습니다.
2. 장애인 생산시설 지정·재지정 심사기준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IV. 장애인 생산시설 지정·재지정 심사 문제점에 대한 참여자의 의견 청취(전환질문)

1. 신청자의 적격성
 - 신청자격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 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정보통신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직업재활시설'에 한하고 있는데 신청자격 기관을 확대하거나 축소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비율
 - "중증장애인근로자" 기준에 시각장애인(1~2급), 지체장애인(1~2급), 청각장애인(2급), 신장 장애인(2급), 뇌전증장애인(2급), 간장애인(1~2급), 안면장애인(2급), 장루·요루장애인(2급) 등 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 3급 장애인을 포함해야 합니까?
 - 해당 품목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근로를 제공하는 장애인이 최소 1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까?
 - 장애인근로자 고용비율(70% 이상) 및 중증장애인 고용비율(장애인근로자 중 60% 이상, 제5조 각 호의 품목은 장애인근로자 중 30% 이상)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까?
3. 장애인근로자 생산 공정 참여율 (총 근로시간 50% 이상)
 - 장애인근로자 생산 공정 참여율 (총 근로시간 50% 이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습니까?
4. 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생산 여부



- “직접생산”이란 신청일 기준 생산 공장에서 해당품목의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필요한 시설, 설비, 생산 인력 및 전문기술인력, 제품 생산 및 판매에 필요한 자격 등을 갖추고 해당 품목을 직접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 생산공장 인정 범위와 관련해 수정할 내용이 있습니까?
- 생산·검사설비의 구매 또는 설치 증빙서류(계약서, 지급내역, 생산시설 재무제표 상 자산등재 등)를 기초로 현장의 설치 설비와 대조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을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 일용직을 전문기술 인력의 보유로 간주할 필요가 있습니까?
- 제조물품 등의 완제 여부 및 기타사항과 관련해 수정할 내용이 있습니까?
- 5. 재지정 관련 추가 문항
 - 재지정 심사 간소화를 위한 인센티브나 추가 문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장기간 중증장애인근로자 고용 유지, 우수 기관 선정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합니까?

V. 장애인 생산시설 지정·재지정 심사기준 개선을 위한 논의(주요질문)

1. 장애인 생산시설 지정·재지정 심사기준의 현 제도·정책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 그러한 문제점의 주된 원인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장애인 생산시설 지정·재지정 심사기준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VI FGI 정리 및 종료(마무리 질문)

1. 본 FGI의 목적 및 필요성을 간략히 다시 요약하겠습니다.
2. 본 FGI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겠습니다.
3. 요약한 내용에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본 FGI를 종료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및 재지정 심사기준 개선 연구
델파이조사 전문가용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에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및 재지정 심사기준 개선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원은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써 장애인정책 개선방안 및 대안을 수립하고 개발된 정책집행에 따른 결과를 수집하고 평가하는데 기초가 되는 다양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델파이조사의 목적은 현행 생산시설 지정·재지정 심사기준을 이해하고 연구자가 제시한 지정·재지정 심사기준안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생산시설 및 직업재활 분야에서 최소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전문가 15인을 대상으로 제시된 지정·재지정 심사기준의 내용타당도를 조사합니다.

기존의 선행연구, 문헌 검토 및 생산시설 관리자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토대로 지정·재지정 심사기준 개선안을 델파이조사 문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델파이조사의 목적을 이해하시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기 원하는 경우 조사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에 대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생산시설 지정·재지정 심사기준을 개선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델파이조사를 통한 모든 응답은 오직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되며, 응답자에 관한 일체의 신상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저히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문의 및
연락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연구개발팀 서원선 부연구위원
전 화 : 02-3433-0658
E-mail : wonsunseo@koddi.or.kr

A. 응답자 기본정보

1 성별	① 남 ② 여	2 연령	① 20세-29세 ② 30세-39세 ③ 40세-49세 ④ 50세-59세 ⑤ 60세이상
3 근무 분야 및 기간	① 생산시설 관련 분야(년 월 근무) ② 직업재활 관련 분야(년 월 근무) ③ 사회복지 및 장애인 복지 관련 분야(년 월 근무) ④ 보조기기 관련 분야(년 월 근무) ⑤ 장애인단체/활동 관련 분야(년 월 근무) ⑥ 기타 분야(년 월 근무)		



- 본 조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재지정 심사기준 개선을 위한 조사로서 각 심사기준을 영역별 문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아래는 구체적인 지정·재지정 심사기준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내용의 내용 타당도를 해당란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B. 재지정 심사 관련 행정 간소화

아래는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재지정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나열한 <표>입니다. 서류는 크게 법정서류, 추가서류로 구분되며 추가서류는 신청자의 적격성 판정, 근로자 관련, 직접생산 관련 서류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세부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의 양이 방대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재지정 심사시 행정 간소화를 위한 의견을 묻고 자합니다. 아래 <표>의 내용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분	증빙서류	유형 (필수여부)	
법정서류	·법인설립허가증	·장애인복지단체(필수)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장애인직업재활시설(필수)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필증	·정신질환자 재활훈련시설 (직업재활시설)(필수)	
	·정관 또는 규약	·공통(필수)	
	·근로자 임금대장 및 산정방식	·공통(필수)	
	·재지정심사 신청양식	·공통(필수)	
추가서류	신청자 적격성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장애인복지 관련 고유목적사업 실적 내역	
	근로자 관련	·세부품목 신청 서류	·공통(필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공통(필수)
		·전체(장애인·비장애인 전체) 근로자 근로계약서	·공통(필수)
		·장애인증명서	·공통(필수)
		·장애인 직무기술서	·공통(필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통(필수)
		·시설 대표자의 경우 국세청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출·퇴근 기록부(최근 1개월)	·공통(필수)

구분	증빙서류	유형 (필수여부)
	·급여대장, 급여 이체내역, 급여이체 통장 사본 (최근 1개월)	·공통(필수)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예산신청 및 승인 공문 및 상세(붙임 양식 포함)	·장애인직업재활시설(필수) ·정신질환자 재활훈련시설 (직업재활시설)(필수)
	·지방자치단체 임면보고 승인 공문 (지자체→생산시설)	·공통(이력서는 필수)
	·(해당 시) 일용근로자 관련	·공통
	·(해당 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서	·공통
	·(해당 시) 공장등록증명서	·공통(필수)
추가서류 직접생산 관련	·사업자등록증명	·공통(필수)
	·(해당 시) 공장등록증명서	·공통
	·일반건축물대장	·공통(필수)
	·(해당 시) 생산시설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	·공통
	·(해당 시) 생산시설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체내역 및 통장사본	
	·(해당 시) 생산시설 사업장 월 임 차료 이체내역 및 통장 사본(최근 1개월)	
	·(해당 시) 생산공장 임대인 사업자 등록증 (최근1개월) 국세청 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직업재활시설 ·재활훈련시설(직업재활시설)
	·(해당 시) 위·수탁협약서	
	·전기요금 고지서, 이체내역 및 통장 표지 (최근 1개월)	·공통(필수)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또는 고정자산관리대장 또는 생산설비·검사설비 구입 증빙 서류	·공통(필수)
	·재무제표 5종(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식)	·공통(필수)
	·(해당 시) 생산·검사설비 임대차계약서	·공통
	·(해당 시) 생산·검사설비 임차보증금 이체 내역 및 통장 표지	
·(해당 시) 생산·검사설비 월 임차료 이체내역 및 통장 표지		



구분	증빙서류	유형 (필수여부)
	·(해당 시) 기증 및 공증서	
	·신청품목을 생산·판매하기 위한 필수 인허가 서류 (예시) - 비누,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화장지: 위생용품제조업신고증 - 물티슈, 화장품: 화장품제조업 신고증 - 조명기구: KC인증서류, 검교정성적서 등 - 제과제빵, 김치: 영업신고증 - 청소: 위생용역업신고증 - CCTV: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필증 등	·공통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서비스) 사업계획서	·공통(필수)
	·매입장·매출장 (3개년도)	·공통(필수)

현재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재지정 심사를 위해 위<표>와 같은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있습니다. 재지정 심사의 행정 간소화를 위해 위<표>의 서류 중

- ① 재지정심사 신청양식,
- ② 근로자 임금대장 및 산정방식
- ③ 재무제표 5종(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④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 ⑤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식)

다섯 가지 서류만을 제출하여 재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1. 귀하께서는 현재의 재심사 서류 중 위의 다섯 가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재심사를 위한 필요 서류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타당하지 못함	타당하지 못함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①	②	③	④	⑤

1-2. 매우 타당하지 못함, 타당하지 못함, 보통에 표시한 경우 그 이유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1-3. 위 다섯 가지 서류 이외 꼭 추가하여야 하는 서류가 있다면 서류명과 이유를 각각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가지 서류 이외 추가서류 명:
이유:

2-1 재심사 서류 중 직접생산 확인의 경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인증을 받은 품목에 한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증으로 갈음하는것에 대해서 귀하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해당란에 √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타당하지 못함	타당하지 못함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①	②	③	④	⑤

2-2. 매우 타당하지 못함, 타당하지 못함, 보통에 표시한 경우 그 이유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C. 재지정 심사 인센티브

아래 3~6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심사를 1회 한정 면제해 주기 위한 요건들에 대한 타당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3-1. 귀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심사를 1회 한정 면제해 주는 요건으로 '중증장애인 추가고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타당하지 못함	타당하지 못함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①	②	③	④	⑤

3-2. 매우 타당하지 못함, 타당하지 못함, 보통에 표시한 경우 그 이유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3-3. 타당함, 매우 타당함에 표시한 경우 추가고용 인원은 몇 명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와 그 이유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은 귀하가 제시한 적정 추가 고용인원을 가정하시면 됩니다.



- 적정 추가 고용인원: ____명
- 적정 추가 고용인원을 ○명으로 산정한 이유:

3-4. 적정 추가 고용인원에 대한 최소 고용유지 기간은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개월 혹은 년으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적정 추가 고용인원 최소 고용유지 기간: (____)개월 혹은 (____)년
- 적정 추가 고용인원에 대한 최소 고용 유지 기간을 ○개월 혹은 ○년으로 산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1. 귀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심사를 1회 한정 면제해 주는 요건으로 '적정 수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타당하지 못함	타당하지 못함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①	②	③	④	⑤

4-2. 매우 타당하지 못함, 타당하지 못함, 보통에 표시한 경우 그 이유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4-3. 타당함, 매우 타당함에 표시한 경우 '적정 수준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적정 수준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

5-1. 귀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심사를 1회 한정 면제해 주는 요건으로 '근로자 등에 대해 착취·학대 또는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예방조치 및 교육 등을 연 1회 이상 실시'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타당하지 못함	타당하지 못함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①	②	③	④	⑤

5-2. 매우 타당하지 못함, 타당하지 못함, 보통에 표시한 경우 그 이유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6-1. 귀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심사를 1회 한정 면제해 주는 요건으로 '시설의 장과 직업재활 지원 인력이 연 1회 이상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방법으로 중증장

애인생산물품 우선구매 교육 이수'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타당하지 못함	타당하지 못함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①	②	③	④	⑤

6-2. 매우 타당하지 못함, 타당하지 못함, 보통에 표시한 경우 그 이유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7. 위 제시된 방법 이외 재지정 심사를 면제해 줄 방안이 있다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유:



D. 기타 기준 개정

8. 현재 장애인 채용은 3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3개월 내에 채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재지정 기준에 3개월 이상 유예 조항(예를 들어, 채용공고 및 채용노력을 증빙하는 경우)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별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타당하지 못함	타당하지 못함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①	②	③	④	⑤

8-1. 매우 타당하지 못함, 타당하지 못함, 보통에 표시한 경우 그 이유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참고: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항목별 심사 기준

2.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비울신청자의 적격성

나. 장애인근로자 최소 고용인원 수

1) 해당 품목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근로를 제공하는 장애인이 최소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각 품목 별로 근로를 제공하는 장애인이 최소 5명 이상이어야 한다.

2) 단,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생산시설에서 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장애인근로자 최소 고용인원 수가 미달되었으나, 퇴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총원되어 충족된 경우에는 장애인근로자 최소 고용인원 수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장애인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 등으로 인해 고용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인원을 평균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단, 이 경우에도 지정(재지정을 포함함)이 된 이후에는 지정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고용인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9. 현재 재지정 심사는 매 3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지정 기간을 매 5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타당하지 못함	타당하지 못함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①	②	③	④	⑤

9-1. 매우 타당하지 못함, 타당하지 못함, 보통에 표시한 경우 그 이유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참고: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시행령」**

제16조(생산시설의 지정기준등)

① 법제9조 제1항에 따라 생산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중략...

② 법제9조 제1항에 따른 생산시설지정 또는 재지정의 유효기간은 지정 또는 재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10. 임금체불, 노동법위반, 성 관련 비위, 장애인 차별/인권침해 등과 관련해 명백한 비위행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 행정처분은 범죄조사기관, 노동청,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 의한 최종 결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

매우 타당하지 못함	타당하지 못함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①	②	③	④	⑤

10-1. 매우 타당하지 못함, 타당하지 못함, 보통에 표시한 경우 그 이유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참고: 현행 행정처분 사유별 주요내용**

- 생산시설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법 제10조제1항1호)
- 품질보증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제1항2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거나 자금을 지원 받은 때 또는 지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법 제10조제1항3호)
-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때(법 제10조제1항4호)
-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때(법 제10조제1항5호)
-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법 제10조제1항1호)

11. 귀하는 생산시설 근로자의 안전 점검을 위해 아래와 같은 체크리스트(안)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타당하지 못함	타당하지 못함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①	②	③	④	⑤



11-1. 매우 타당하지 못함, 타당하지 못함, 보통에 표시한 경우 그 이유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유:

11-2. 체크리스트 중 추가되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적어주십시오.

추가 되어야 할 사항:

*참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근로자의 안전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안)

구분	내용	
시설 환경	출근-업무장소 까지 이동하는 과정에 대한 안전성	주출입구 접근로(경사로, 유해환경 유무) ※주 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 2cm 이하
	장애인편의 시설 설치여부 지체 :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옆 손잡이, 엘리베이터, 점자블록, 경사로, 발달 : 계단 미끄럼방지, 모서리부분 안전장치, 근무환경 정리부분 등	
	경보 및 피난설비(피난안내등, 음성 점멸유도등, 비상계단 등)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 확인	
	근로자의 편의를 위한 냉·난방 시설	
	시설 내 환기시설(환풍기), 공기청정기 등 비치 유무	
	★고려사항 ※ 공장 등을 임대해서 사용할 경우 시설환경부분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음(장애인편의시설들이 구축 건물들에는 갖추어져있지 않음). → 장애인표준사업장 신청의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동의를 받고있음 ※ 소방관련된 부분은 점검 가능함(의무). ※ 근로인중 다수를 차지하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시설환경 부분에 대한 고민 필요	
안전 관리	안전관리계획서(비상대책수립) 유무 (시설 특성에 따라 피난계획, 소방계획 등이 포함되어야함)	
	업무장소 내 피난 안내도 부착 여부	
	피난 통로 확보 확인(피난 동선에 적치물 확인 등)	
	책임보험 가입 유무	
	시설 자체 안전 점검 내역확인(월1회) 안전교육 실시여부 확인(소방, 산업안전, 기계설비 관련)	

	<p>안전 관련 규칙에 따라 안전장비나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소화기 등)</p> <p>★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위 사항들을 월/분기/반기별로 주무관청에 보고하게 되어있고, 시설평가 기준에 포함되어 있음.</p>
기계 제조업	★비상정지 스위치는 설치 유무
	★투입구/절단구에 가드가 설치 유무
	★가동스위치는 안전조치(스위치 덮개, 울 등)가 설치 유무
	★작업공정에 적합한 복장착용 확인 (회전하거나 왕복하는 부분에 휘말릴 수 있는 헐거운 옷을 착용하였는가)
	★벨트 롤러 폴리 등 끼임 위험부위에 방호덮개 설치여부
	★작업범위 내 위험구역 표시 및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표식 설치 여부 +안전보건 표식 설치 여부
	★작업장 주변의 정리정돈 상태 점검
★작업자의 각 작업공정에 적합한 보호기구(보호안경, 장갑, 방독 마스크 등)를 착용 여부	



E.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의견

12.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 18조(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중증장애인생산물 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개선 명령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나.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조제1항제2호				
1)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선 명령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2)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물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때 또는 지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법 제10조제1항제3호	지정 취소			
라.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물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법 제10조제1항제5호	지정 취소			
마. 법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0조제1항제6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현재의 중증장애인생산물 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에서 수정이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자유로운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유:

1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 18조의3제1항(매출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아래와 <표1, 표2>와 같습니다.

<표 1> 매출액의 산정기준

- 가. 제3호가목1)의 위반행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위반행위 기간 동안 공공기관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납품한 금액. 다만, 위반행위 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동안 공공기관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납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나. 제3호가목2)의 위반행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공공기관과 체결한 중증장애인생산품 납품 계약 중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계약의 매출액 또는 계약액
- 다. 제3호가목3)의 위반행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동안 공공기관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납품한 금액

<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 1개월당 과징금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	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
2)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	제2호나목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
3) 법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	제2호다목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

현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과징금 부과 부분에서 수정이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자유로운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유:

14. 아래의 표는 수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시행령 제21조 관련)내용입니다.



〈표〉 수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 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2개월	지정취소	
다.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3호	경고	업무정지 2개월	지정취소	
라. 법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제4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지정취소

현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부분에서 수정이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자유로운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유:

15. 아래 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

〈표〉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18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 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	100	200	300

현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수행기관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수정이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으면 자유로운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및 재지정 심사기준 개선 연구
델파이조사 전문가용 2차 질문지

안녕하십니까?
1차 델파이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지는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제시되었던 항목 중 삭제, 수정, 추가된 문항이 있습니다. 추가 문항은 다른 전문가들의 의견 및 본 연구진의 관점, 기존 항목과의 중복 및 포함 여부 등을 고려하여 조정되었으므로 귀하께서 제출해 주신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도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중에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설문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한국장애인개발원
Korea Disabled People's Development Institute

문의 및 연락처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연구개발팀 서원선 부연구위원 전 화 : 02-3433-0658 E-mail : wonsunseo@gmail.com
-------------	--

A. 응답자 기본정보

소속:	성명:
-----	-----

- 본 조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재지정 심사기준 개선을 위한 조사로서 각 심사기준을 영역별 문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아래는 구체적인 지정·재지정 심사기준 개선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내용의 내용타당도를 해당란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B. 재지정 심사 관련 행정 간소화

아래는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재지정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나열한 <표>입니다. 서류는 크게 법정서류, 추가서류로 구분되며 추가서류는 신청자의 적격성 판정, 근로자 관련, 직접생산 관련 서류로 구성이 되어있으며 세부적으로 요구되는 서류의 양이 방대합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재지정 심사시 행정 간소화를 위한 의견을 묻고 자합니다. 아래 <표>의 내용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분	증빙서류	유형 (필수여부)	
법정서류	·법인설립허가증	·장애인복지단체(필수)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장애인직업재활시설(필수)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필증	·정신질환자 재활훈련시설 (직업재활시설)(필수)	
	·정관 또는 규약	·공통(필수)	
	·근로자 임금대장 및 산정방식	·공통(필수)	
	·재지정심사 신청양식	·공통(필수)	
추가서류	신청 자 적격 성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장애인복지 관련 고유목적사업 실적 내역	·공통(필수) ·장애인복지단체(필수)
	근로자 관련	·세부품목 신청 서류	·공통(필수)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공통(필수)
		·전체(장애인·비장애인 전체) 근로자 근로계약서	·공통(필수)
		·장애인증명서	·공통(필수)
		·장애인 직무기술서	·공통(필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시설 대표자의 경우 국세청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공통(필수)
		·출·퇴근 기록부(최근 1개월)	·공통(필수)
		·급여대장, 급여 이체내역, 급여이체 통장사본(최근 1개월)	·공통(필수)
		·지방자치단체 인건비 예산신청 및 승인 공문 및 상세(붙임 양식 포함)	·장애인직업재활시설(필수)
		·지방자치단체 임면보고 승인 공문 (지자체 →생산시설)	·정신질환자 재활훈련시설 (직업재활시설)(필수)
		·품목별 전문기술인력 이력서(필수), 자격증(해당 시)	·공통(이력서는 필수)
		·(해당 시) 일용근로자 관련	·공통
·(해당 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서	·공통		
추가서류 직접생산 관련	·사업자등록증명	·공통(필수)	
	·(해당 시) 공장등록증명서	·공통	
	·일반건축물대장	·공통(필수)	
	·(해당 시) 생산시설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또는 전대차계약서)		
	·(해당 시) 생산시설 사업장 임차보증금 이체내역 및 통장사본	·공통	
	·(해당 시) 생산시설 사업장 월 임차료 이체내역 및 통장 사본(최근 1개월)		



구분	증빙서류	유형 (필수여부)
	·(해당 시) 생산공장 임대인 사업자 등록증 (최근1개월) 국세청 사실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해당 시) 위·수탁협약서	·직업재활시설 ·재활훈련시설(직업재활시설)
	·전기요금 고지서, 이체내역 및 통장 표지 (최근 1개월)	·공통(필수)
	·유형자산감가상각비명세서 또는 고정자산 관리대장 또는 생산설비·검사설비 구입 증빙 서류	·공통(필수)
	·재무제표 5종(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식)	·공통(필수)
	·(해당 시) 생산·검사설비 임대차계약서	
	·(해당 시) 생산·검사설비 임차보증금 이체 내역 및 통장 표지	·공통
	·(해당 시) 생산·검사설비 월 임차료 이체 내역 및 통장 표지	
	·(해당 시) 기증 및 공증서	·공통
	·신청품목을 생산·판매하기 위한 필수 인허가 서류 (예시) - 비누,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화장지: 위생용품제조업신고증 - 물티슈, 화장품: 화장품제조업 신고증 - 조명기구: KC인증서류, 검교정성적서 등 - 제과제빵, 김치: 영업신고증 - 청소: 위생용역업신고증 - CCTV: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등록필증 등	·공통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서비스) 사업계획서	·공통(필수)
	·매입장·매출장 (3개년도)	·공통(필수)

현재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재지정 심사를 위해 위(표)와 같은 서류를 모두 제출하고 있습니다. 재지정 심사의 행정 간소화를 위해 위(표)의 서류 중

- ① 재지정심사 신청양식,
- ② 근로자 임금대장 및 산정방식
- ③ 재무제표 5종(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 ④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⑤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및 주식)

다섯 가지 서류만을 제출하여 재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1. 귀하께서는 현재의 재심사 서류 중 위의 다섯 가지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재심사를 위한 필요 서류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균	매우 타당하지 못함	타당하지 못함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3.56	①	②	③	④	⑤

④ 타당함, ⑤ 매우 타당함에 응답하신 분은 2번 문항으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① 매우 타당하지 못함, ② 타당하지 못함, ③ 보통에 응답하신 경우 1-2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1-2(신규문항). 매우 타당하지 못함, 타당하지 못함, 보통에 표시한 경우만 응답 부탁드립니다. 위 다섯 가지 서류 이외 추가 되어야 할 서류가 있다면 해당란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서비스) 사업계획서	근로계약서	세부품목 신청서류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장애인 증명서

응답 후 1-3으로 이동 부탁드립니다.

1-3. 귀하께서는 1-1의 다섯가지 서류와 1-2에 응답하신 서류가 추가된다면 재심사를 위한 필요 서류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타당하지 못함	타당하지 못함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①	②	③	④	⑤

1-4. 기타의견 재심사 필요서류 관련 기타 의견이 있으면 작성 부탁드립니다.

기타 의견:

2-1 재심사 서류 중 직접생산 확인의 경우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인증을 받은 품목에 한해서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인증증으로 같음하는것에 대해서 귀하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란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균	매우 타당하지 못함	타당하지 못함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4.06	①	②	③	④	⑤

2-2. 이와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면 작성 부탁드립니다.



기타 의견:

C. 재지정 심사 인센티브

3-1(수정문항). 귀하는 장애인의 (일시적 추가 고용을 방지하는 대책이 마련)된다면 중증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재지정 심사를 1회 한정 면제해 주는 요건으로 '중증장애인 추가고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추가고용을 하지 않았을 때 가해지는 제재가 없는(시설의 고용 부담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장애인 추가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플러스 인센티브 제도입니다.

평균	매우 타당하지 못함	타당하지 못함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3.13	①	②	③	④	⑤

3-2. 플러스 인센티브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타당하지 못함, 타당하지 못함, 보통으로 응답한 이유에 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의견:

3-3. 추가고용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면 작성 부탁드립니다.

의견:

D. 기타 기준 개정

4. 현재 장애인 채용은 3개월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3개월 내에 채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재지정 기준에 3개월 이상 유예 조항(예를 들어, 채용공고 및 채용노력을 증빙하는 경우)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항목별 심사기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균	매우 타당하지 못함	타당하지 못함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3.81	①	②	③	④	⑤

4-1. 이와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면 작성 부탁드립니다.

의견:



참고: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관련 항목별 심사 기준

2. 장애인근로자 고용 및 비울신청자의 적격성

나. 장애인근로자 최소 고용인원 수

1) 해당 품목의 직접 생산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 근로를 제공하는 장애인이 최소 10명 이상이어야 한

다. 다만, 둘 이상의 품목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각 품목 별로 근로를 제공하는 장애인이 최소 5명 이상이어야 한다.

2) 단,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생산시설에서 퇴사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장애인근로자 최소 고용인원 수가 미달되었으나, 퇴사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총원되어 충족된 경우에는 장애인근로자 최소 고용인원 수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장애인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 등으로 인해 고용기준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인원을 평균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단, 이 경우에도 지정(재지정)을 포함함이 된 이후에는 지정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고용인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5. 임금체불, 노동법위반, 성 관련 비위, 장애인 차별/인권침해 등과 관련해 명백한 비위 행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단 행정처분은 범죄조사기관, 노동청,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공공기관에 의한 최종 결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

평균	매우 타당하지 못함	타당하지 못함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3.75	①	②	③	④	⑤

5-1. 매우 타당하지 못함, 타당하지 못함, 보통으로 응답하신 경우 행정처분 이외에 비위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의견 부탁드립니다.

의견:

***참고: 현행 행정처분 사유별 주요내용**

- 생산시설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법 제10조제1항1호)
-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제1항2호)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거나 자금을 지원 받은 때 또는 지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때(법 제10조제1항3호)
- 불가피한 경영상의 사유로 정상적인 생산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의 취소를 요청한 때(법 제10조제1항4호)
-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때(법 제10조제1항5호)
-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법 제10조제1항1호)

6. (1차 문항수정). 귀하는 다른 부처(지자체 포함)의 안전관련 법규에 해당하는 내용과 차별성을 담보한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근로자의 안전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균	매우 타당하지 못함	타당하지 못함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3.63	①	②	③	④	⑤

6-1. 이와 관련된 기타 의견이 있으면 작성 부탁드립니다.

의견:

*참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근로자의 안전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안)

구분	내용	
시설 환경	출근-업무장소까지 이동하는 과정에 대한 안전성	주출입구 접근로(경사로, 유해환경 유무) ※주 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 2cm 이하
	장애인편의 시설 설치여부 지체 :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옆 손잡이, 엘리베이터, 점자블록, 경사로, 발달 : 계단 미끄럼방지, 모서리부분 안전장치, 근무환경 정리부분 등	
	경보 및 피난설비(피난안내등, 음성 점멸유도등, 비상계단 등)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 확인	
	근로자의 편의를 위한 냉·난방 시설	
	시설 내 환기시설(환풍기), 공기청정기 등 비치 유무	
	★고려사항 ※ 공장 등을 임대해서 사용할 경우 시설환경부분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음(장애인편의시설들이 구축 건물들에는 갖추어져있지 않음). → 장애인표준사업장 신청의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장애인용 편의시설 설치동 의서를 받고있음 ※ 소방관련된 부분은 점검 가능함(의무). ※ 근로인중 다수를 차지하는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시설환경 부분에 대한 고민 필요	
안전 관리	안전관리계획서(비상대책수립) 유무 (시설 특성에 따라 피난계획, 소방계획 등이 포함되어야함)	
	업무장소 내 피난 안내도 부착 여부	
	피난 통로 확보 확인(피난 동선에 적치물 확인 등)	
	책임보험 가입 유무	



구분	내용
	시설 자체 안전 점검 내역확인(월1회)
	안전교육 실시여부 확인(소방, 산업안전, 기계설비 관련)
	안전 관련 규칙에 따라 안전장비나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소화기 등)
	★작업재활시설의 경우 위 사항들을 월/분기/반기별로 주무관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시설평가 기준에 포함되어 있음.
기계제조업	★비상정지 스위치는 설치 유무
	★투입구/절단구에 가드가 설치 유무
	★가동스위치는 안전조치(스위치 덮개, 울 등)가 설치 유무
	★작업공정에 적합한 복장착용 확인 (회전하거나 왕복하는 부분에 휘말릴 수 있는 헐거운 옷을 착용하였는가)
	★벨트 롤러 플리 등 끼임 위험부위에 방호덮개 설치여부
	★작업범위 내 위험구역 표시 및 관계근로자 외 출입금지 표시 설치 여부 +안전보건 표시 설치 여부
	★작업장 주변의 정리정돈 상태 점검
★작업자의 각 작업공정에 적합한 보호기구(보호안경, 장갑, 방독 마스크 등)를 착용 여부	

E.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의견

7.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 18조(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0조제1항제1호	개선 명령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나.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조제1항제2호				
1)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선 명령	영업 정지	영업 정지	지정 취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3개월	6개월	
2)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증장애인생산물 생산시설로 지정을 받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때 또는 지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법 제10조제1항제3호	지정 취소			
라.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물 생산시설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법 제10조제1항제5호	지정 취소			
마. 법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0조제1항제6호	영업 정지 1개월	영업 정지 3개월	영업 정지 6개월	지정 취소

생산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현 기준보다 다소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타당하지 못함	타당하지 못함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①	②	③	④	⑤

7-1. 이와 관련된 기타 의견이 있으면 작성 부탁드립니다.

기타의견:

8. 중증장애인생산물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 18조의3제1항(매출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아래 <표1, 표2>와 같습니다.

<표 1> 매출액의 산정기준

가. 제3호가목1)의 위반행위: 중증장애인생산물 생산시설이 위반행위 기간 동안 공공기관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납품한 금액. 다만, 위반행위 기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동안 공공기관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납품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제3호가목2)의 위반행위: 중증장애인생산물 생산시설이 공공기관과 체결한 중증장애인생산물 납품 계약 중 해당 위반행위가 있었던 계약의 매출액 또는 계약액



다. 제3호가목3)의 위반행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 동안 공공기관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납품한 금액

〈표 2〉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영업정지 1개월당 과징금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	제2호가목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
2) 품질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	제2호나목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
3) 법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10조의2제1항	제2호다목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

현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과징금 부과 부분을 다소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타당하지 못함	타당하지 못함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①	②	③	④	⑤

8-1. 이와 관련된 기타 의견이 있으면 작성 부탁드립니다.

기타의견:

9. 아래 표는 수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시행령 제21조 관련)내용입니다.

〈표〉 수행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3조제1항 제1호	지정취소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법 제13조제1항 제2호	경고	업무정지 2개월	지정취소	
다.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요	법 제13조제1항 제3호	경고	업무정지 2개월	지정취소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건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라. 법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 제4호	경고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지정취소

현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부분을 다소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타당하지 못함	타당하지 못함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①	②	③	④	⑤

9-1. 이와 관련된 기타 의견이 있으면 작성 부탁드립니다.

기타의견:

10. 아래 표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25조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표〉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18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조사·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23조 제1항	100	200	300

현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수행기관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다소 강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타당하지 못함	타당하지 못함	보통	타당함	매우 타당함
①	②	③	④	⑤

10-1. 이와 관련된 기타 의견이 있으면 작성 부탁드립니다.

기타의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및 재지정 심사기준 개선 연구

발행일 : 2023년 10월

발행인 : 이경혜

발행처 : 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5층

Tel. 02-3433-0600

Fax. 02-3433-9567

<http://www.koddi.or.kr>

편집·인쇄 : 유-파트너 보호작업장

ISBN 978-89-6921-497-3 93330

※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무단 복사하는 것을 금합니다.